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3일(수)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 220365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0)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 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	4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	4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	4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	53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	53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68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	68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	85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	85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	85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	85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	85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	85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	85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	85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85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85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85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85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85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85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85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21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121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121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121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121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12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12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12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121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 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10시06분)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의사일정 16항, 17항 및 36항,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16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16항 유상범 의원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입니다.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위원님 등이 외국인 인적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이 있으셨고요.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3개 조항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관련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정보를 표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과세 업무 등의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수사나 과세, 복지 등 행정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의 ‘다만’은 조문 자구 수정인데요.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마다 달리 표기된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통일해서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로써 외국인 행정 정보를 통합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정확한 기본인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행정기관마다 정보를 연계해서 정확한 정보를 각자 관리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대신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등’이라는 곳에 법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취급하는 업무는 가족관계등록, 즉 혼인신고에 기초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어서 외국인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음 나는 대로 그것을 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er이라고 끝나는 사람을 뭐라고 읽을 건지, 메르라고 읽을 건지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세나 또는 수사나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 한다면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가족관계등록까지도 그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일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기관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참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항 단서를 보게 되면 ‘사용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을 해석해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저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었던 이러한 명칭을 다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저희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차관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단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권고를 하면 이 규정이 없더라도 각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 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가 있는 외국인들의 통일적인 데이터, 이름의 데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에 제일 중요한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하고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여권번호, 이 여섯 가지가 가장

중요한 번호인네요.

이게 각 행정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여권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또 외국인등록번호도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여권에 기재가 돼 있는 성하고 이름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법무부에서는 여권에 있는 정확한 이름과 여권번호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법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행정기관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외국인등록번호는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외국인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권에 있는 번호를 중시하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권에 있는 번호가 기본이라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 가서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을 해요? 아니면 행정기관이 여권번호로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것은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체납된 외국인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통보를 해 달라, 출입국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을 여권번호로 관리를 안 했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성과 이름이 순서가 바뀌면 딴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은 다음에 분석해 보면 이름, 여권에 있는 진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차관님, 그것은 국세청이 일을 못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생겨서……

○서영교 위원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와서 국세도 체납하고 그러는데 외국인등록번호는 90일 이상이면 매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은 여권번호를 중심으로 매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통일되는 거지.

그런데 국세청이 외국인번호로 등록해 놓고, 여권번호로 등록하면 여권 이름과 똑같은 것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향후 외국인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고 행정을 볼 때는 여권번호를 중심으로 하고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등록하게 합니다라고 해서 국세청에 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등록하게 해야지 지금 말처럼 바보처럼 거기는 외국인번호로 등록해서 그것 다 헷갈리니까 이제 법무부가 정리해서 나눠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지자체도 그 사람을 외국인번호로 등록해 놓겠어요, 아니면 외국인이 오면 당신의 외국인번호는 이것이지만 당신의 기본인 여권번호와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러겠어요? 이 지침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건데 정부 전체가 그렇게 내려서 모든 등록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소

가 갖고 있던 여권번호와…… 외국인은 특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좀 있다고 다른 번호로 등록 안 한단 말이에요. 여권번호에다가 여권에 있는 이름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것을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애매할 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자료를 주겠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것은 국세청은 어디는 다 번호가 다르니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일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팬한 돈 쓰는 것 아니야? 팬한 에너지 낭비하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허술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여권번호하고 이걸 하는데 국세청이 무슨 다른 번호를 가지고 체납자 관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지난번보다는 공부를 해 오셔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걸 조정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고민하는 건 갑자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전체 일괄로 꽉 한다면 돈도 들고 사람도 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면 내가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범죄 일으킬 수 있어, 세금 체납했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정비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 내 걸 정비하지? 이런 과정 속에서 와 있는 외국인을 전부 다 범죄자 취급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도 수사기관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속이겠지요. 다른 번호를 쓰든지 다른 여권을 쓰든지 속이겠지요.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것 전체를 재정비한다고 한다면 외국과의 관계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보고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외국에 나갈 수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국세청에는 그 예가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 사람을 알고 통지를 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여권번호가 아니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보한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국세청은 전부 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하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하나요, 여권번호로 관리하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사안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해서 확인 안 됐던 건데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게 국세청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만일 외국인등록번호로 전체를 관리한다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국세청은 여권번호로 관리해야

된다고 지침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례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가 그렇게 통일되지 않게, 국세청은 외국인번호 아니면 다른 데는 다른 번호로 하는지…… 제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압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속에서 아까 말씀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정하는데 전체를 통일했으니 아기 출생 등록한 것까지 이제 다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그 이름까지, 자기네가 여권번호랑 상관없이 이름도 등록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제어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6대 정보하고 똑같이 입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필요성은 안 생길 수 있는데 이미 입력돼 있는 정보는 지금 와서 다시 소급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해서 제대로 입력을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정보들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딱 한 말씀 더 지적하면요 일을 하시는데, 이게 유상범 의원님 안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요청하신 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치밀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요청받으면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아직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다만 요청을 해 주면 되는데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거를 저희가……

○서영교 위원 요청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요청을 하면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해서 알려 드릴 수 있는데……

○서영교 위원 지금도 금방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세청에 체납자가 들어왔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국세청이 요청한 게 아니라. 국세청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법무부가 먼저 알려 준 거라면서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세청이 체납자가 들어오면 알려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 준 거지요. 그런데 서로 관리하는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국세청은 그걸 캐치를 못 했던 사례가 발생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다른 분도 좀 질의를……

○장동혁 위원 차관님, 저는 그런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걸로 관리를 하니까, 외국인등록번호로 통보를 하면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는 여권번호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납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번호를 통보하고, ‘이런 체납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우리는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

에 여권번호든 다른 번호든 우리가 관리하는 번호로 식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통보는 왔는데……

아니, 외국인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돼 있어 가지고 아무리 비교해 봐도 이게 동일성이 식별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국세청은 여권번호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했으면 '우리는 외국인등록번호로는 관리가 안 되니 여권번호를 알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체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그 업무를 그렇게 제대로 못 한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도 지금 서영교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에 도대체 어떻게 관리…… 아니, 이게 안 맞으면 도대체 누군지 다시 알려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리 해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조금 여쭤보면 차관님, 외국인 기본정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그 틈새를 비집고 정당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또 제가 본, 한국인인데 외국 나가서 오래 살아 가지고 외국 국적까지 취득한 경우에 이중국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통일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한국 국적의 의무는 이행을 안 하면서, 예컨대 국방의 의무라든가 납세의 의무는 안 하면서 외국인 국적으로 활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 기본정보를 관계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도 필요성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쨌건 수집하거나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본정보는 78조 규정대로 하는 거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있고, 그다음에 78조의2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법무부가 제공하는 기본정보를 갖추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누락되거나 빠져나가는 외국인이 없도록 통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예컨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적정보가 불일치해서 나중에 보니까 체납 문제라든가 국방의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고소·고발 당해서 기소 중지 중인데 마음대로 도망가거나 빠져나간다든가 출국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몇 건인지는 혹시 좀 파악은 되셨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구체적으로 문제 된 사례들은 확인했는데 전체 문제 된 사례들이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사실은 제가 법사위 소위하면서 그런 기본 정보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수치가 얼마나 있는지…… 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당연히 정보나 안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수치가 와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려면 이러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걸 보내주고 오겠다고 해야지, 내가 들으면서 ‘와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오겠다고 하니, 그러면 나는 내용을 좀 알아야 주고받으면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기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관리 불일치 사례라고 하나 예시를 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법무부의 여권과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급자를 보면 이게 불일치한다 예시를 하는 것 같아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다 준비한 자료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저희 본부에서……

○유상범 위원 교육부에서도 ‘이자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권 명과 그 안에 있는 게 한글로 쓰다 보니까 동일인이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예시를 한 거지요, 이거?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지금 통계 자료로 뽑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게 몇 건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각 부처마다 다 찾으려면 실제로 그쪽에서 쉽게 찾아지겠어요, 무슨 통계 자료로 관리되는 게 아닌데?

○서영교 위원 그러니 그동안 있었던 자료라도 통계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문제가 된 사례들을 한번 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안 보이는 걸 막 찾아 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시키려면 이만이만한 게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법의 취지는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왔을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만의 외국인이 있는데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하는 중심 기관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부처에서 각종 필요한 계절근로자든지 뭔지 하는 걸 각 부처별로 입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입력하는 내용을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입력을 하면 결국은 사람들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도 국가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효용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것이 마치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종의 빅 브러더처럼 외국인을 다 통제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오면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 자체는 보면, 실제로 법무부에서 하는 외국인등록의 안을 기본으로 모든 가능한 행정부처에서 그대로 쓰면 적어도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동일인으로 계속 유지되듯이 외국인은 그렇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차원

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자체는 중요한, 이 자체로 나중에 많은 어떤 잘못을 수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서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죽 정리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박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택 위원 어쨌든 우리 내국인들 동일한 인적사항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표기와 생년월일로 이루어진 자료들이 국가기관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의 이름은 틀리기도 쉽고 뭔가 정확지 않은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공통되게 헷갈리지 않게 공백이 없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 해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저도 지난번에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수집하고 각 기관, 행정기관마다 달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통계라든가 필요성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제시가 없었고요.

또 궁금한 게 지금 수사·재판 보면 피의자, 피고인의 이름을 발음 나는 대로 쓴다든가, 아까도 행정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정보를 입력할 때 아까 이자툰인가 예시 보면 들어올 때 교육부는 이자툰으로 했고 법무부는 원문을 써놓으니까 불일치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의 발음을 이자툰으로 해라 이렇게 통일시킨다는 것인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여권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시킨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다른 부처에서는 이거를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성하고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원칙이라는 게, 법령상 외국인의 국내 표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라고 법에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원칙적인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성윤 위원 그 원칙이 틀린 게…… 기본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들어온 외국인의 이름은 어디서 관리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해야 대법원하고 일치되는 거지 어디는 외국인등록으로 하고 어디는 여권 정보로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선후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한다든가 원칙을 법에 넣고

그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각 기관마다 다르니까 ‘저희 법무부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법무부에서 관리해서……

○이성윤 위원 아니, 법에 원칙이 없는데 관리를 해서 반대로 된 거잖아요.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법사위도 오래 하고 또 시민단체 운동도 오래 하고 이러면서 잘못하면 과잉이다. 외국에서 이렇게 정비하면서 사실은 불법체류자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 건 없을 건가요? 하여간 이러면서 약간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 금방 말씀처럼 그러면 모든 원칙은 여권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등록번호는 그다음 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는 여권……

그리고 사랑이법이라고 아기가 탄생하면 아기가 주민등록증, 외국인 아기 같은 경우에 출생신고를 못 해요. 출생신고를 못 하니까 아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아기한테 행정기관이 번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하고 출생 등록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와 있지만 자기가 외국인등록번호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권은 이러이런 순으로 한다.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존리 박인지 박 존리인지 우리도 그려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딱 통일시킨다, 기본 원칙 그리고 여권의 원칙. 여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행안부나 지자체가 관리번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번호 이런 것까지 같이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하면 이게 외국인을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의미로 되는데 지난번 들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이름을 바꿨을 때 국세청에서 이렇게 되니까 전체를 범죄자로 보는 것처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더 있는 거고, 이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하셔서 주시면서 밖으로도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전파를 할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동혁 위원 저도 보충하면 이성윤 위원님이나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일의 선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해서 등록을 하거나 정보를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병기하도록 하고, 이름도 원칙적으로 여권에 있는 그대로 기입을 하고 필요한 경우 한글을 발음 나는 대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됐으니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서 통보하면 해당 기관은 이 원칙에 맞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통일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오해도 안 생길 것이고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통일적으로 관리가 될 건데 앞뒤, 선후 다 자르고 ‘우리가 통보할 테니까

앞으로 기관들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 이렇게 법문이 비쳐지니까 지금 여러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도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제78조의2 3항을 보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여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글을 병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정하면 그런 혼란이랄까 그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까지 포함해 가지고 더 합리적인 안을 신속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여권을 쓴다, 한글을 병기한다를 법률로써 정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넣어서 그걸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일적으로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법안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기본정보가 일치가 안 돼서 빠져나가는 사례를 저도 왕왕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간사님 필요하시면 오늘……

○유상범 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장동혁 위원 저도 그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통일돼 있지 않으면 행정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다시 법무부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이에 그분이 출국할 수도 있고 이미 집행은 돼 버리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공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적으로 잘 건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결사반대인데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위원장께서 뒤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보내 와서…… 아니,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면 밖으로 '대한민국은 왜 저러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강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사반대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과 어떻게 선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 정보를 다 정리하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도 해 주고, 출생하는 아이든 그 가족이든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본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이 취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취지를 그렇게 한다는 전제하에 통과를…… 옆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 다음번에 하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취지가 뭔지는 아실 거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제가 몇 번 차관님께 말씀드리지만 오시려면 기본 자료와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법안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런 시각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서영교 위원 그럼요.

○유상범 위원 특히 외국인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 쓰시던 분이 보면 이것 마치 정부에서 전체를 범죄자처럼 다 살살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면 행정상 정리가 안 된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정보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자료만 제공되면, 각 행정기관에서 법무부에 요청만 하면 그 자료 받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딱 정리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건 생각이고요. 범죄를 저지른 애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이름을 얘기했어, 그것 정리하기 위해서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상범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요. 있어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걸로 생각한 건데, 그게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지문 채취 때를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때 일본이 지문 채취를 하면서 한국 사람을 전부 다 범죄자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엄청 나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유상범 위원 하여튼 서영교 위원님의 말씀 잘, 각 골명심하셔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서영교 위원님께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저도 불법, 탈법만 생각하고 있다가…… 성실하게 납세의무 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대다수가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에 대한 보호책도,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새로 깨달았고 그건 차관님께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률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네.

○서영교 위원 아니, 진짜 중요합니다. 동네에 웬만한 사람이 정말 성실히 가정을 이끌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걸 다시 정비해? 왜 그러지?’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도 외국인 인권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36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법안도 외국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7항과 제36항 출입국관리법, 정부안과 박주민 의원안, 2개 안입니다.

1쪽입니다.

정부안 제출됐고요, 박주민 의원안은 직회부돼서 2건입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이하의 조문별 심사자료는 조문 전체하고 별도로 제시를 해 놨는데요. 그중에 크게 카테고리를 봐서 3개의 쟁점이 있어서 그걸 먼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쟁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인데요.

정부안의 경우에 보호기간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18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고요.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을 때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계속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거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도록 하고 또 보호 해제된 사람을 다시 재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보호 관련 주체가 조금 다른데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보호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40일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해서 최대 100일, 정부안하고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심문 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보호된 사람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표는 세부 내용이고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이 법문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인정되는데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한과 관련돼서 적정 구금기간이 정부안처럼 18개월에 추가적으로 18개월 해서 최대 36개월인지,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20일에 40일, 40일 해서 최대 100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호 해제 및 연장 허가의 주체 관련이 또 쟁점인데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보호 해제나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할 건지 법원으로 할 건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의 기관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원이 할 건지 아니면 행정위원회라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맞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5쪽의 보호 해제 후 재보호 관련해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보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기간 제한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보호자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에 변호사 조력권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대한 논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보호 해제 조건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보호 해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6쪽의 상단은 조문 정리 차원의 얘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심사를 해라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입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냐 외국인보호위원회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독립성·중립성 보장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위원회의 구성 멤버로서 외부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또 상임위원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다 위임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상임위원 중에 외부위원이 상임위원으로 몇 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보호 대상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관련해서 정부안이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나 보호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당해 외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라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변호인 조력권 요구하고 선임권, 이런 고지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쉬운 의견을 피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 주요 쟁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처음 가항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대한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보호기간 상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제가 전제로 설명드릴 부분이 외국인이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일 경우에 강제퇴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제퇴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최대 20일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단기간이 20일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은 강제퇴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송환이 안 될 경우에 현행법에 의하면 상한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위한 보호에는 최대 20일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심사 이후, 강제퇴거 집행 단계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송환이 안 됐을 때는 상한이 없다는 게 헌법불합치결정의 가장 중요한 논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외국, 유럽연합 불법체류자 송환지침을 검토를 해 보니까 18개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기본이 18개월이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최장기간이 18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3개월부터 시작을 하고 3개월 지나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18개월이 최상한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관련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8개월이 상한이 아니고 36개월이 상한이다, 이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한을 정하는 부분은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예를 참고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한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우선 보호기간의 적정한 상한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보호기간 상한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 불법체류자 송환지침 등에 보게 되면 18개월이 절대적 상한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 과도한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18개월이 아니라 36개월로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18개월까지는 유럽연합에서도 절대적인 상한으로 보고 있어서 18개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36개월을 인정하게 되면, 물론 심사를 받기는 하겠지만 과도한 체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부에서 36개월로 하게 된 자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18개월을 초과하는 부분?

○법무부차관 김석우 18개월 부분은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상한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만 현 법재판소 취지가 최소한 상한을 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도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36개월이 나온 것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상한이 18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 정도로 하면, 물론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상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36개월을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상정이 안 돼서, 그러면 36개월까지 보호 구금하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으로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를 상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6개월이 최상한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상한을 정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상한을 정했는데, 18개월이 일반적인 범죄의 최상한이기 때문에 그거의 한 2배 정도로 정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통상 말씀하신 중대범죄를 하게 되면 외국인이라도 교정시설로 구금이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유치시켜 놓을 필요가 없는 내용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경우는, 구속된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구속이 안 된 경우도.....

○**유상범 위원** 구속이 안 된 경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구속이 안 된 경우를 상정해서 36개월로 얘기한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만약에 구속이 돼 있으면.....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구속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행정처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예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구체적 예는 없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다 보면, 구금이 장기화됐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현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봅시다. 유럽 송환지침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구금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EU에서 그렇게 판단한 범죄가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각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서, 이게 테러 관련 범죄를 규정한 경우나 국가안보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게 되면, 사실은 18개월로 제한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중대범죄의 경우 재판기간이 상당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외국으로 강제퇴거명령을 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재판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 강제송환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저항을

해서 강제송환이 불가능해졌을 때 보호명령을 내려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이 보호기간 자체도 중대범죄 저지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을 했다,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탄압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게 되면 재판 끝날 때까지는 강제송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8개월 지나서 풀어 준다고 하게 되면 국내에 중한 위해가 발생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풀어 주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사례, 우리가 그동안은 상한 없이 계속 구금하고 있었던 상태인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장기간 보호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서영교 위원 말은 보호인데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장기간 보호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고……

○서영교 위원 장기간 보호는 어디에서 하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가 보호유치소에서 하지요.

○서영교 위원 보호유치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출입국에서 담당하는……

○유상범 위원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이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보호시설에서 합니다.

○서영교 위원 보호시설이라고 출입국관리소에 있어요, 아니면 그 곳곳마다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곳곳마다 있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 여기 ‘관할 지방 판사가 한다’ 이렇게 되면 곳곳마다 보호관리시설이 있나 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무한정 관리할 필요는 없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불법체류자는 그냥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18개월까지 데리고 있어야 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상범 위원 난민 신청 같은 거 하는 경우는, 테러범죄는 안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난민 신청할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난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18개월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1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최상한이고 기본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보호 유치를 하고 넘어갈 때마다 보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3개월 정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험해. 간첩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의 가장 전제는 강제퇴거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퇴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서영교 위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퇴거를 시키면 되는데 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본인이 저항해서 비행기에 못 태운 사례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퇴거를 집행해야 됩니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강제퇴거가 가능할 때까지 유치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상한이 없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라 상한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18개월·18개월 두 번이 가능하다 이게 정부안이고, 박주민 의원안은 아니야, 인권의 우려나 이런 것을 받아서 20일 내로 보내 버려, 그게 안 되면 40일씩 두 번 연장해서 100일까지 가능해. 이렇게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짧게 하자고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나 안 나갈래요’ 버티니까 18개월까지 보호하고 또 18개월을 더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박주민 의원안은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이 참고한 나라가 프랑스하고 대만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났다가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문제가 돼서 210일까지인가 늘리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대만의 경우가 문제인데 대만의 경우는 90일 정도로 짧습니다만 난민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난민제도가 없기 때문에 난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송환이 안 되는 경우는 대만에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약간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짧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도 안 받아 주고 안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강제퇴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계속 국내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관님,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지요. 불법체류자고 체류 자격에 맞지 않게 영리 활동을 했다거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있는다거나 그런 유형들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게 해서 강제퇴거명령 하고 바로 강제 퇴거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테러범죄나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을 하시고 일단 재판하실 건가요? 강제퇴거명령하고 수사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강제퇴거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테러를 저지른 것이 갑자기 뒤늦게 발견돼 가지고 집에 보내려다가 ‘잠깐만, 너 이리 와 봐. 재판받아야 되니까 너 여기 한 36개월은 있어야 되겠는데’……

○서영교 위원 그래서 잡아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장동혁 위원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을 뭘 강제퇴거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강제퇴거명령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와 지금 이 범죄로서……

좋아요. 18개월까지는 제가 ‘그래요’ 그러는데, 18개월까지도 안 되고 36개월 불잡아야 될 정도로 테러 저지르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지금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상충되지 않고 뒤늦게 뭔가가 발생돼 가지고 퇴거명령까지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36개월 받아 줘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들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 테러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당신 테러범죄 저질렀으니까 강제로 나가. 그런데 일단 재판받을 동안 우리가 36개월은 불잡아 둬야겠어’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혹시 담당 국장께 질의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36개월 잡아 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유상범 위원 말씀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저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아까 불법체류자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체류하다가 예컨대 범죄를 저질러서 일정 형의 선고를 받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비자로 들어왔는데 딴짓을 해 가지고 그게 적발된 경우에 강제 퇴거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난민 신청자는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난민 신청자도 강제 퇴거할 수는 있습니다.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소위원장 김승원 신청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난민 신청자가 있고 난민 인정자가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는 정상적으로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한 번 100여 명, 200여 명이 한국에 집단적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그 무렵에? 그건 신청자고, 그렇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난민 인정자가 되기 위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법원의 재판받는 경우도 있고 법무부 난민실이 직접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재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만약에 난민 신청자가 불법체류자면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재판기간 동안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입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만일 보호소에 있는 사람으면 재판 중에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호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출국을 거부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 신청자를 저희가 강제송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지금 18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내에 체류하겠다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해야지 이 사람들을 출국을 시킬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 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 정도 기간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버티다가 내가 다시 한국 사회로 나가겠다……

○소위원장 김승원 좋습니다. 어쨌건 강제퇴거명령자인데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 때문에 3개월씩 해서 계속 보호를 해야 된다는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실제로 그게 많이 있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난민이 한 절반 정도, 지금 보호소에 1년 이상 있는 사람 중의 한 절반 정도가 난민 신청한 사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난민이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다른 경우는 여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권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서 잘 발급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나 절대 안 가’, 무조건 출국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고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든지 민형사 소송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심사를 해서 체불임금도 찾아 줄 수 있는 경우는 법무부에서 찾아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찾아 줄 수 없거나 이 사람이 말하는 데 신빙성 자체가 굉장히 없으면 무조건 체불임금이 있으니까 또 소송 제기했으니까 ‘나 풀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저희가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성에 무슨 외국인보호소인가 그런 데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면 다른 곳이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거기뿐만 아니고 큰 전문 보호시설이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에서 장기 보호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장기 보호를 하고. 환경은 수감자, 수형자,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환경입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보호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통제된 시설에서 못 나가고 계속 수감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연간 한 4만 명 정도를 보호합니다. 대부분 단속입니다. 그러면 한 93% 전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불법 취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소에 있다가 저희가 강제퇴거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한 93% 되고 한 7%가 형사 범죄자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인부터 해서 각종 형사 범죄를 하고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서 집행이 종료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저희들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어쨌든 범죄자고 또 범죄자인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은 국외로, 자기 나라로 송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게 바로 보내면 되는데요, 범죄자들.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면 형 집행을 마쳤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정하는 것은 36개월을 붙잡아 두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불법체류로 퇴거 명령하고 잠깐 보호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갑자기 국가보안법이나 테러 이겼으로 범죄행위가 발생돼서 재판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상정하기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행정처분인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직권으로 취소도 가능한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사유가 있으면 직권 취소……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난민이나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인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 봐야 되니까 그것을 굳이 미리 취소할 필요야 없겠습니다마는 강제퇴거명령 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나 테러범이나 이런 혐의가 발생돼서 수사하고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 한 것을 취소하고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형 집행 종료되거나 재판 종료돼서 내보내야 되면 빨리 내보내면 되지, 이런 사유가 있는데 강제퇴거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36개월 동안 보호시설에 가둬 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게 저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수용하고 있었다라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사유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정당하게 형 집행받고 본인이 형사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고 해결되자마자 바로 보내야 되는데 월 36개월…… 18개월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을 하거나 했더라도 취소하고 그래야 될 사안인데 이 사람들은 36개월을 보호시설에 붙잡아 둔다고 하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사회로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다 이해 못 하는 게 출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강제퇴거명령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어디다 버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장동혁 위원** 난민 신청까지는 그렇다 쳐요, 재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8개월은 인정하겠다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테러 저지른 사람이 못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36개월을 잡아 두겠다고 하는 게 그러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외적인, 그래서 아까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인 여권이 없는 경우에,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비행기 태워 가지고 어디다가 두고 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은 인정한다고요, 뭐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그것을 방치……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정부 법안인데 여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이해를, 소통이 안 되셨는가……

○**유상범 위원** 주재국 대사관이랑 얘기해서 여권을 발부받아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이, 출국 거부하면 계속 잡아 둬야 된다고 하니, 그것이 36개월까지 간다고 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여권은 대부분 나라에서는 발급을 다 해 줍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냥 내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내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개 국가에서는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 가는 데도 잘 협조가 안 되는 나라도……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논리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사유를 제가……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18개월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테러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36개월이냐는 거예요. 18개월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36개월로 하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보다. 그런데 기본이 18개월이고 그게 최상한이고 국제적인 기준도 그렇다고 해 놓고 갑자기 국가보안법하고 테러 저지른 이런 사람들, 중대범죄 저지른 사람은 퇴거명령 해 놓고 36개월 불잡아 둔다고 하니까…… 여권 문제, 그러면 18개월은 인정하겠다고요. 그러면 여권이 문제라면 다른 사람 다 18개월이 아니라 36개월로 해야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18개월 돼서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만약에 강제송환이 어려워서 이 중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 불체자들에 비해서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본부장님,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여기는 100일이라는 말

이에요, 정부안은 3개월씩 끊는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 18개월이고. 박주민 의원안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최장 10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것.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수십년 동안 출입국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무기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보호외국인들이 계속 대한민국에 있어 봐야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이때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기간이 설정된다면, 그게 18개월이든 12개월이든 일단은 목표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저 정도 기간이면 내가 한번—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버텨 보겠다는 외국인들이 지금보다 저는 몇 배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박주민 의원님 안은 최장 100일이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기간이 짧을수록 그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어떤가요? 100일 버티고 그다음에 풀어 줘야 된다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사회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우리나라 사회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불법체류자들이라든지 범죄자, 전과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주민 의원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장 100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그쪽의 설명은 없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따로 설명은.....

○소위원장 김승원 없었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유상범 위원 통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구금일수가 3개월 미만인 외국인이 전체의 90% 이상, 1년 이상 구금되는 외국인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제퇴거명령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정리된 게 있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을 한번 줘 보시면, 우리가 18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장은 얼마까지 갔는지 통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간사님, 자료 49쪽을 보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미국 이민법에 중대범죄는 절대 보호 해제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구금됐다가 나와서 보호시설로 온 사람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더라도 보호 해제를 안 해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발견됐다면 강제퇴거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계속 보호하고 재판 끝날 때까지 있고 형 집행되고 나면 바로 내보내든지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강제퇴거명령 되면 안 될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36개월간 붙잡아 두겠다고 하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속 재판 받을 건데, 중대범죄에다가 외국인인데 당연히 구속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2023년에도 50명이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 사유가 본국 송환 거부 또는 난민 신청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설명이 가능한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있습니다. 여권 미소지도 있고 임금체불도 있고 그다음에 출국 비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민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소송하는 사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그래서 강제퇴거명령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퇴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내보내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법무부에서 18개월로 상한을 정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강제 퇴거해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18개월 동안 만약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서 2년이 갔는데, 본부장 말씀은 민형사 소송을 하거나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소송을 수행할 수는 있어야 돼요. 문제는 18개월을 정했는데 18개월이 지나면 일단 본국 송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퇴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한정.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그것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18개월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중대범죄를 왜 36개월로 했느냐에 대한 답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민사소송이든 뭐든, 난민 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받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서 결론 짓고 어떻게든 할 시간을 18개월 주는 것은 좋은데 왜 갑자기 중대범죄는 36개월로 늘어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대범죄가 발견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퇴거명령 할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완료돼서 저희가 인수가 되면……

○장동혁 위원 그때는 바로 내보내야지요, 무슨 36개월이 또 필요합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러니까 저희가……

○장동혁 위원 지금 문제는, 강제퇴거명령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장동혁 위원 그리고 그로부터 36개월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가 상정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강제퇴거명령을 해야지 장기간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법상.

○박균택 위원 아마 법무부 취지는 저거지요. 그러니까 강제퇴거를 바로 시키려고 노력 을 하는데 우연한, 특별한 사정으로 강제퇴거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시키지 못하는 우연한 사정이 발견될 때 이 기간을 짧게 하면 국내에다가 풀어 줘야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국내에 풀어 주는 기간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길게 하겠다는……

○박균택 위원 최대한 늦춰 보려고 연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런 뜻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18개월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중대범죄를 왜 갑자기 차별화 를 시켜 가지고 36개월로 늘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유상범 위원 차라리 저렇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 건데 중대범죄라고 해 버리니까 이상하지요.

○장동혁 위원 외국인 중대범죄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중대범죄가 발견된 즉시 강제퇴거명령 할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에서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강제퇴거를 합니다.

○장동혁 위원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돼서 인계받으면 강제퇴거명령 바로 하실 거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36개월 동안 잡아 둘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내보내야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바로 내보내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가 여러 가지 여권 문제라든지……

○장동혁 위원 중대범죄 형 집행이 끝났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여권 문제는 제가 18개월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나 참, 죽겠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아니, 18개월이 지나도 여권을 못 받는 경우 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장동혁 위원 아니,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갑자기 36개월로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묻는데……

지금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이 다 끝나고 인계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제퇴거명령 그때 하실 거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36개월이냐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18개월 안에 우리가 내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강제퇴거를 할 수……

○**박균택 위원** 제가 대신 한번……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저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대신 답 한번 해 볼게요.

18개월 안에 내쫓지 못하면 풀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일반 범죄자나 일반 퇴거명령자는 18개월 만에 풀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는데 테러범이나 중대범죄는 나가서 민간인을 상대로 또 테러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를까 봐 걱정돼서 더 묶어 두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 뜻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왜 그 설명을 안 하십니까?

○**장동혁 위원** 그것을 18개월 안에……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18개월 안에 해결 못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18개월 안에……

○**장동혁 위원** 중대범죄자들 말고 18개월 안에 내보내야 되는데 해결 못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한국에 풀어놓으실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최대한 강제호송을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보내기 위해……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런데 진짜 불가피하게 18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보호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위원** 어떻게든 18개월 안에 해결하도록……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어쩔 때는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서라도 보내려고 시도도 많이 합니다. 태워도 어쩔 때는 기장이, 비행기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또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아서……

○**소위원장 김승원** 본부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이상 보호기간 대상자가 2019년도에 29명, 2020년도에 17명, 2021년도에 12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의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난민 신청 재판과 관련된 것인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기간이 오래될수록 계속 있는 경우는 난민 신청자들 비율이 좀 높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29명, 17명, 12명이 난민 신청을 한 대상자였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비율상 그중에 거의 한 50%……

○**소위원장 김승원** 29명 중에서도 50%인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소위원장 김승원** 나머지 50%는 뭐예요? 2년 이상 중에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아까 말씀대로 출국 거부, 임금 체불, 여권 미

소지, 기타 민형사 소송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위원장 김승원** 강제퇴거명령인데, 강제퇴거명령.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서 그 나라까지 우리 직원들이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강제지요. 강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했는데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워서 기장이 항공기 안전상 이것 받을 수 없다 하니까 다시 또 우리가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상대국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니 다시 그냥 데리고 오는 경우나 아예 그냥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 대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법에 의해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은 저희가 강제로 비행기 태우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29명, 17명, 12명이 난민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를 다음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소위원장 김승원** 이건 한 번 더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상범 위원** 전체를 꼭 보고 나서, 이것 하나에서 멈춰 버리면 나머지는 논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간은 100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18개월로 하는 건 맞는데, 저 주장 중에 18개월로 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만 마무리 질문 하고.

18개월로 한 이유가 여기 보호기간, 보호 인원을 보면 18개월 이후에는 거의 다 해소가 돼 왔기 때문에 그 통계에 기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물론 그 측면도 있고, 상한이 있는 OECD나 유럽 국가 중에 18개월로 설정하는 나라가 가장 많았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해외 입법 사례도 18개월이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계에도 지금 2년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18개월 정도면 다 해소가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3개월씩 연장 결정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18개월을 더 연장하면서 거기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중대범죄를 넣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위원** 저는 그 필요성이 있다면 중대범죄자에 대해서는 상한을 정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지난 사례들이 저는 어떤 사례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민 재판하거나 그런 것 외에 이미 그런 사유가 전혀 없이 중대범죄라서 바로 나가야 될 사람들 중에 여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최장 얼마가 걸렸는지 저는 그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런데 여권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진짜 30개월, 36개월 넘어간 경우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중대범죄는 별도로 한다면 현재가 뭐라고 했든 상한을 일반적으로 설정하지만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상한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현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한마디만 부연 설명을 좀……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재 결정 중에 그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결정에서는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 대상 조항으로 인해서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18개월, 36개월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저희가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비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자는 풀어 준다는 개념인데 중대범죄자는 36개월 동안, 18개월 정도 저희가 좀 더 국가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지만 대상자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비례 원칙상 18개월을 조금 더 감내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지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현재 재판이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판 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금이 될 것이고요. 난민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입국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판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구금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라는 논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불복을 해서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재판을 통해서 다뤄야 되고, 거기에 집행 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이 확정돼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

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여권이 없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할 때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는 이 사람 받을 수 없다고 한다거나 이런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구금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회에 환원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면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호를 하는 기간 중에 빨리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을 연장받아서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집행을 못 한다는 사유만으로 구금이 되니까 이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금의 기한을 제한하려는 것이 현재 결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논의를 할 때는 강제퇴거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길어진다거나 이 사람이 중대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재판에 관련돼서 이렇다거나 하는 논의는 좀 더 결이 다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보충 말씀 드렸습니다.

####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결국 형 집행을 마치고 난 이후의 일일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거나 여권이 잘 안 되거나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똑같다는 겁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아니든. 그러면 저쪽에서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3년 지나고 나서는. 똑같은 문제고, 보호하는 구금시설에 가두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형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형을 다 받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대…… 물론 우리 사회 안전의 측면, 국민 안전의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사정은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18개월이 적정하나 36개월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건 없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 사회 안전을 위해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6개월…… 더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내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36개월 동안 여유를 두고 그 노력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최대한 다하겠지만 그런 선의에 기한다면 저는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노력하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호기간 상한이 생기면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프리카든 비행기 몇 번 환승해서라도 데려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36개월이 돼도 저희가 장기 보호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극소수지만 있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좀 두자 그런 입법 취지입니다.

####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서도 송환을 지체시키는 장애를 제거하는 등 송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피보호자가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송환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송환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18개월이 나온 거고, 36개월 된 것은 당사자가 사회에 바로 나왔을 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18개월 동안 좀 더 불이익을 줘도 헌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차별성을 좀 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취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국에서 송환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 송환이 안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결국 이 기간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해당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을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종종까지는 아니고 아주 예외적……

○**유상범 위원** 예외적이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런 일부 좀……

○**유상범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시 데리고 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갖춰서 또다시 시도를 합니다, 두 번, 세 번.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해당 가능성성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 나라에서도 중대 범죄자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것은, 구체적인 그 나라 입장까지 저희가…… 저희들도 이것 하다 보면 이해 못 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국가들이 몇 개 나라지만 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유상범 위원** 차라리 18개월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송환국에서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명확한 이런 규정을 좀 넣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기간을 정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외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는 상한이 없다는 게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라서 일단 상한을 정한다는 것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18개월이나 36개월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것을 채운다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라고 다들 아실 거고,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연장을 하고 36개월 갈 때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논의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송환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고, 그게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범죄보다는 조금 더, 18개월 동안 보호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와 비례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헌법적인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송환을 했는데 당사국에서 송환 거부를 해서 결국 한국에 다시 데려왔을 때 이 사람을 바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설명은 됐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 문제는 추후에 한번 논의하고 나머지 안부터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가항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그러면 4쪽 하단의 보호 해제나 이런 업무를 누가 할 거냐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법무부 의견을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법관에 의한 통제 등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외국인보호위원회도 둘 수 있고 아니면 박주민 의원님처럼 예컨대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거겠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현재 판결 취지가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또 구제를 강구한다는 게 과잉……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가 상정될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한번……

○**유상범 위원** 일단 법무부랑 법원행정처에서 박주민 의원의 안처럼 판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먼저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점입니다. 절차적인, 적법절차 위반 부분인데 현재에서는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보호명령이 발령되고 지방출입국·외국인판서 장의 신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법무부장관의 연장 승인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해서 현실의 문제점이, 법무부장관이 연장 승인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하지 않고, 법무부 내에 속해 있습니다만 독립된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 외국인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개월마다 심의를 거치게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현재에서 말했던 적법절차 이 부분의 현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호심사 위원회에서 연장을 하는 부분도 결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부분에 법원이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에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적인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에 따르면 누가 해야 된다는 판시는 없고요. 다만 소수의견에 보게 되면 사법부의 관여를 일부 언급한 재판관도 있기는 합니다.

당초에 법무부의 의견이 나왔을 때 저희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 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최근에 제기가 된 박주민 의원님 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안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강제퇴거명령 자체에 대해서 당부를 다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뤄야 될 문제고요. 여기에 병행을 해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면서 보호처분, 유치를 하는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도 당연히 행정청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투는 것이 지금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 행정처분에서 다투는 방법이 행정청에서 일단 다투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사후적 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침해라는 구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법원이 처음부터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형태도 일단 보호처분은 행정청에서 내려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보호처분이 적정하냐를 판단하는 것이라 구속영장으로 따져 보게 되면 그냥 구속영장을 행정기관이 발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부심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종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사법통제 기능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유형이라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연장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호처분은 행정기관이 했었는데 그 연장을 제삼자가 결정을하도록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 연장의 적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연장은 제삼의 기관이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도 설계에 있어서 명확한 설정이 참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법원의 영역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재판 유형을 만드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충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장동혁 위원** 차장님 그런저런 되게 어려운 설명을 붙이셨지만 ‘입법으로 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금 판사 수가 절대 부족한데 이 업무까지 법원에서 맡으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은 도저히 할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 점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법원에서 해야 될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하는 걸로 법안을 낸 의원님들의 고민은 지금 법무부를 포함해서 행정부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행정부가 독립적…… 그냥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비판이 있거나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비판을 면하고 책임을 나누고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위원 구성들을 보면 결국은 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은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반이 결국은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그날 와서 아니면 그날 오전에 와서 자료 받아 보고 설명 듣고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그런 결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까지, 법원까지 이렇게 법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유상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보호기간을 계속 연장할 거냐 해제할 거냐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집행 단계의 문제예요. 결정이 났고 집행 단계의 문제니까 그 과정에서 연장하고 해제하는 것은 집행부인 법무부 내의 독립된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삼권분립 형식 또 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기간 연장까지 법원이 관여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본 구조는 법무부에서 만든 안대로 내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집행의 계속 여부 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할 때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형식적이어서 사실은 장관의 의사대로, 행정기관의 의사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박균택 위원님 질의……

○박균택 위원 이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독립성,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허가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설령 이것을 법무부 안처럼 위원회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위원회 구성을 법률가라든가 법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강화하는 것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 정부 법안에는 외부 인사의 숫자에 대한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과반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는 것 자체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참고로 위원 자격도 법률안에 있습니다. 제66조의6제4항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박균택 위원 이게 다수여야 한다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법률가 또는 변호사 내지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게끔, 인권에 대한 관념을 명백히 가진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건 저희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면 퇴거명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무부로서는 퇴거명령이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퇴거 조치가 되도록 노력할 건데 연장하는 경우는 결국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라서 신청하면 사실상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고려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사법부까지 가져간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회 구성만 독립적인 의사결정,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저도 위원회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계속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통지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잡혀 오는 경우, 그때는 바로 구금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구금을 하면서 보통 강제퇴거명령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대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당신은 이제 한국에 머물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출국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아, 출국명령? 그거는 강제퇴거명령과는 다른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금은 하지 않고, 강제퇴거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구금하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다수일 거로 보이는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안 나가고 있다가 잡히면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되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때 구금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또 나가라고 강제퇴거 명령을 합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국명령을 한 번 위반한 경우에는, 두 번째는 보통 구금을 해서 강제퇴거……

○소위원장 김승원 구금을 하지요. 잡아다 놓고 강제로 퇴거를 시킬 텐데 거기서도 안 나가겠다고 또 의사를 밝히면 그때 보호기간을 정해서 붙잡아 두겠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송환

할 때까지 기간이……

○**소위원장 김승원** 기간이 있다. 그래서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구금한 다음에 언제까지…… 그다음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구금한 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호명령서를 발부합니다, 당신이 강제 퇴거할 때까지 보호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김승원** 할 때까지 보호한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송환할 때까지.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지금까지 저희 법이 그랬던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이 개정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개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마다, 18개월이라도 18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3개월마다 연장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구금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언제까지 구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3개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이제는 그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안에 강제출국을 시키려고 하시겠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계속 버티거나 사정이 있어서 안 되면 보호위원회를 열어서 3개월 단위로 하겠다는 그런 거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심사를……

○**소위원장 김승원** 거기에 구금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원으로 가게 됩니까? 일단은 법원에다가 ‘나는 강제퇴거명령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행정재판을 청구해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겠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다투려면 법원에 취소소송이라든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 취소소송이 법원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은 그런 경우에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 나중에 승소를 해도 거의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20일 이내 혹은 40일 이내, 100일 안에 그 결정을 끝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유상범 위원** 법원이 그렇게 끝내 주겠어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소위원장 김승원** 새로운 재판 유형을 넣어서……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도 방금 차관께 여쭤봐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강제퇴거명령을 행정청에서 내리게 되면 집행을 할 텐데 집행이 불능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순순히 안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구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금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나 영장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강제퇴거명령이 집행 불능이 되면 그때로부터 구금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장기화가 돼 버리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 구금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소위원장 김승원** 이의신청을 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을 여기서 하거나 그다음에 구금의 기간을 3개월씩 하되 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은 A라는 기관에서 하는데 연장을 B라는 기관에서 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강제퇴거명령이 집행 불능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구금이 되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금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은 지금 이 행정청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고요.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려면 법원을 통해서 다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고 돼 있고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송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송환이 안 됐을 때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법문의 규정이라서, 저희가 관행적으로는 ‘구금’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법상 용어는 ‘보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재에서 지적한 것은 보호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투 수 있는 것은 3개월마다 연장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가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호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장할 때—양쪽 다 포함합니다—제삼의 기관을 통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장관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구제는 법원으로 하는 게 저도 그 절차를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의 구제를 받으려면 시간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법적 통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상범 위원** 일단 이 항은 안이 정리됐으니까 위원회안으로 가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만 논의할 테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너무 안 오시는데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오후에 정리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오후에 하시지요.

그다음에 의결정족수도 아직 안 되어서 의결은 오후에 오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나중에 해, 일단 논의됐고.

그러면 가항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리된 걸로, 위원회안으로 가는 걸로 일단 우리 내부의 의견은 정리된 걸로 봐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및 36항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5페이지부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오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 관련돼서 추가로 좀 이해 편의를 돋고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위원들 세 분 계시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시면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면 좀 더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주진우 위원님 들어오시니까 넷 됐으니까 하시라 그러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차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5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일반범죄자는 18개월이 상한인데 중대범죄자의 경우에 36개월이 상한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 되는 사항은 강제퇴거명령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보호명령이 있는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대해서 다투지 않거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다투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 체류를 한 이후에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이른바 확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순순하게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나갔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버텨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저희가 국외 호송 시도를 외국인 10명을 했는데 그중에 4건이 실패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문제 되는 유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 스스로 끝까지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해서 버티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은 나갈 의사가 없지만 본국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국이 여권을 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끝까지 버티는 사람 또는 본국이 이 사람을 우리는 수용 안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 되는 이유일 건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우리 현행법대로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었고 법무부장관한테 3개월마다 연장을 받는 절차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최소한 상한은 정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EU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준은 18개월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부 나라들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아예 상한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정에 의하면 상한을 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닌 36개월로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두 명 정도가 현재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죄명이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준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가 기각이 됐으니까 그대로 보호명령이 있는 건데 현재 보호기간이 16개월 지났거든요. 또 한 명은 콩고 출신인데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으로 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금 이 사람도 강제퇴거 소송을 했는데 집행정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9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6개월도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그렇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간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상한은 정할 수밖에 없고 36개월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비춰 보게 되면 이러한 고위험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일반범죄는 좀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36개월 동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당사자가 퇴거에 협조를 했는지 다음에 우리나라의 송환 노력 또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 출입국 당국이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연장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절차적인 통제를 통해서 그런 고위험자들에 대해서 절차적 권리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면 고위험자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수용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36개월은 너무 긴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상범 위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줬으면 논의가 오래 갈 일도 없었고, 잘하셨는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오전에 찾지를 못해서 지금 설

명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만일 그렇다면 말이지요, 현재 결정의 취지에 따른다면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한 것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18개월을 정하지만 굳이 이와 같이 특수강간이나 또는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풀어 줘도 결국은 다시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위험군을 다시 잡아들여 가지고 또 36개월간 잡아 놓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하는 게 가능하지요.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태 그다음에 과거의 성향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건데 이것처럼 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반 사회에 돌려 놓으면 그 사람을 다시 검거하기 되게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도주하면.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그런 범죄자를 추방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다시 잔류하게 하는 법무 행정의 잘못이라는 논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중범죄의 범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로 법을 개정한다면 그것이 현재에서 말하는 위헌성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현재 결정 취지는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3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국내 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환을 거부하는 당사자 국가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36개월 동안 해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본국에서 수용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해서 못 보내는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면, 3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중대범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제대로 노력을 안 했는데 장기간 동안 보호를 한다고 하면 바로 풀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 들으셨어요, 설명을?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말씀하실 때 한 0.8 곱하기로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차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현재 결정 보니까 불합치 사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 가…… 47페이지 이하에 나오는데요. 보호명령이라든가 이것 하는 기관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좀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이지요? 9인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대개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하시되…… 차관이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하시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요건자들 중에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외부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권단체라든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다 포함은 돼 있지요. 그중에서 적임자를……

○**소위원장 김승원** 혹은 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될 거고, 그런 구성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구성 부분은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과반을 법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져서 그런지 박주민 의원님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8년 동안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이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면심리로 바꾸는 것도 좀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현 법제판소 취지에 맞는 그런 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5페이지부터 이제 할 텐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늘 출입국관리법 두 건 갖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유상범 간사님 안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이 안은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쪽에서 유엔난민기구의 한국 보호관을 좀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봐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일 이후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사님 어떠신가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중요 테마가 있으니까, 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왜 36개월이 나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중대범죄를 저지르고서 계속 본국 귀환을 거부하거나 집행이 안 되는 사람을 18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에 그대로 풀어놨을 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법무부에서는 기간을 최소한 18개월을 더 연장시킨 안을 낸 거고 그래서 이 기간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8개월을 한 것은 좋은데 갑자기 거기다 또 추가 18개월이 됐을 때 그 설명을 자꾸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그렇게 처벌받고 나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강제퇴거가 안 되고 기간이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18개월 만에 풀어 줄 거냐 아니면 좀 더 보호할 거냐 이 문제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논의된 것만 가지고 먼저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간을 우리가 결정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기서 그냥 놔두면, 이것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됐는데…… 이건 정부안이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헌법불합치면 개정 시한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내년 5월 말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은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하자고. 어차피 가장 핵심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다른 법률도 있고 성폭법도 있고 그런데 저는 28일 이후에 다시 한번……

○유상범 위원 이걸 하다가 중단되면 어떡해요? 일단 해 놓고……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조금 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18개월 두 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가 더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을 하세요.

현재대로 가고 싶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밖에 풀어놓지도 못하지만 구금하고 있는 게 더 나았다 이게 우리였고 그런데 어떻든 헌법 불합치해서 ‘안 돼. 상한선을 뛰’라고 하니까 최대 상한선을 18개월, 18개월을 뒀는데 그것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그 시행 관련된 세부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법무부에도 그렇고, 제가 그전에 법사위 할 때는 이런 법안이 있으면 변호사,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단체들의 의견, 인권 단체들의 의견…… 만약 여기에 관련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좀 넣어 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에 서로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그런 의견을 좀 넣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의견을 좀 받아 주고.

이제 제 고민은, 법무부는 더 연장도 하고 싶지만 18개월, 18개월로 가자 그러는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안은 이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최장 100일까지만 하자고 하잖아요. 한쪽은 인권침해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한쪽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를 얘기하고, 차관님 얘기만 들으면 더 데리고 있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건 왜 못 내보내는 건지. 아까 말한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못 보내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면……

○서영교 위원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 나서 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면 못 보내고 있는 건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로 추방을 하면 그 나라가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든 뭐 하든 받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와 국가를 맡는 법무부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못 보내요, 그 나라가 안 받으면 못 보내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최장기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예전에 대구 계명대 여대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고속도로 저 위에 그 시신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팬티가 저쪽에 벗겨져 있었어요. 이게 교통사고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스리랑카 애들이 들어와서 얘를 건드린 거지요. 그것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개네들 우리가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정작 우리는 애네들 처벌도 못 하고, 애네들이 아마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방시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이런 범죄자는 추방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차관님 말씀이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면 못 보내고 거기서 안 받으면 못 보낸다고 하니 그게 국가에서 할 이야기인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전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법무부 입장은 무한정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현재 결정 중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정하는 것과 절차적 권리 부여.

저희가 봤을 때 절차적 권리 부여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해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상한을 무조건 둬야 되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고위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위험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게……

○**서영교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왜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면 못 보내냐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것은 비행기 자체적으로 다른 승객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서영교 위원** 차관님, 이 사람 지금 추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보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난동 부릴 우려가 있어서 못 내보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정리를 못 한다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항공보안법에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서영교 위원**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신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 강간범에 우리나라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비행기에 탑승을 안 시키고 다른 형태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인터폴 통해서 데리고 가라고 그러든지 여러 가지를 취하셔야지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람은 못 내보내니까 우

리나라 국민 세금 가지고 몇 개월을 구금하고 몇 개월을 더 구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오시려면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나가야 되는 저 강간범을, 저 살인범을 추방을 못 시킨다고? 이걸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 질문을 하니까 ‘비행기, 항공법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구금을 시켰어요. 또 구금시켰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것 때문에 구금 일수를 제한을 둬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풀어 줘라 이렇게 불합치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헌법불합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 계속 구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사례 같으면 헌법재판소는 추방시켜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겠지요.

제가 한 번 더 뒤에 있는 분에게 여쭤볼게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면 못 갑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나라에 못 보냅니까?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작년에 10건 정도 저희 직원들이 강제로 비행기에 탑승을 시켜서 수갑 채워서 국외로 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6건은 저희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그 나라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공 입장에서는 그게 항공의 안전 그런 차원에서 또 그쪽은 그쪽 법률이 있는데 저희 출입국관리법만 가지고 어쨌든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서로 지킬, 어느 정도는 그쪽 법을 저희가 준수를 해 줘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것 현행법이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갑도 채우고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 채로 이 사람을 보내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난동까지 못 피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법적 처벌 다 받아서 태웠는데 난동을 피우면 거기서 수갑을 채우긴 어렵겠지요. 그러나 현행법이면 수갑도 채울 수 있겠지요. 그런 걸로 다 적용해 가지고 보내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쪽으로 좀 나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걸 못 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행기 기장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법……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다음에 어떤 처벌을 했어요, 거기서 난동을 피웠을 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 법은 또 저희들이, 만약에 심하다면 경찰이……

**○서영교 위원** 그 뒤는 모르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다시 데려오는 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도가 굉장히 진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것이었다면 경찰이 체포를 해서 다시

구속을 시키고 다시 형사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갈 수 있습니다지, 그러니까 그 사례를 거기까지만 알고 그다음은 모르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을 아셔야 이들이 비행기에 타서 난동을 부릴 때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서 보낸다, 이 조치까지 만드시는 게 맞잖아요.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님, 그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기내에서 어떤 애가 와서 난동을 부려 가지고 비행기가 한 시간, 두 시간 못 뜨면 어떡합니까? 다 쫓아내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탄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태워서 그 나라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못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논의가 가 버리면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간을 본인들이 더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택한 게……

○**서영교 위원** 그래서 말씀처럼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18개월, 18개월이라고 하고 또 박주민 의원은 이것이 인권침해가 있어서 100일이라고 하니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다르고. 헌법불합치는 ‘저런 난동을 피우는데 이것 헌법에 맞지 않아. 그러니 제한을 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통계를……

○**서영교 위원** 나는 그것까지 공부를 안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되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가 보호기간 해제된 기간이 30개월, 33개월, 36개월 이렇게 해서 45페이지인가 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진행한 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자료가 제시됐는데 여기 보면 대체로 2년까지는 보호기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8개월로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36개월로 했는데, 36개월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범죄자의 경우라면 이걸 기간을 줄여 가지고 기간이 도과가, 너무 기간이 짧아지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다시 생활하도록 만들어야 되니 그 기간을 가능한 연장하자 하는 것이 지금 법무부 의견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하겠는데 법무부에 약간 불만은 뭐냐면 극단적인 다른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외국으로 강제퇴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빨리 짧은 기간을 보호하고 웬만하면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든 예가 이해가 안 가는 예인 거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만큼까지……

아까는 그러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했고 ‘간첩죄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안을 얘기하셨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중대범죄는 좀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그 부분 조사를 위해서 보호를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간첩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런 것은 이 사람을 더 하기 위해서 좀 더 데리고 있어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차등을 둬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중대범죄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가 처벌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범죄인지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유상범 위원**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이런 얘기예요.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났는데 이 사람들을 18개월 안에 못 내보내면 대한민국 땅에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6개월로 연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갑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본국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비행기 부분은 물론 위원님……

○**서영교 위원** 간첩죄나 국가보안법인 경우가 본인이 안 나가는 경우와 거기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 죄가 연관된다기보다 이 사람들 강제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유는 강간범이나 풀어 놨을 때 아주 위험한 경우를 예로 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풀어 놨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가보안법도 있고 각종 테러범죄도 있고 살인이나 강력범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차등을 둬 가지고 국가로 하여금 좀 더 긴 기간 동안 노력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비행기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몇 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되는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장의 권한으로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출입국관리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조절을 해 가지고 그런 충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제압을 해서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우리 요원들이 함께 따라붙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상대방 국가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법무부가 노력해도 방법은 없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18개월 18개월 해도,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을 아무리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대표적으로 여권을 발급 안 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하여튼 외교부하고 또 직접 대사관하고……

○**박균택 위원** 결론만 얘기해 보시지요, 그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해서…… 저희가 여행증명서를 받더라도, 어떨 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수용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박균택 위원** 아니, 증명서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가 하여튼 외교적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 나라에서 여권 발급하도록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문제지요.

○**박균택 위원** 결국은 보낼 수 있는 거군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간을 좀 짧게, 아예 그냥 짧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단축해 놓고 상대방의 물리적 저항 내지는 해당 추방 대상국가의 수용 거부 등으로 인하여 추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냥 아예 현실에 맞게 법을 좀 구체적으로 해 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반 범죄는 18개월이 상한선인 반면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본값이 36개월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3개월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판단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협조 여부, 우리나라 또는 송환국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심사위원회에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안 그러면 혹시 송환 대상자가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한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사안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 경우하고 끝까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저항 정도,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태도, 세 가지가 종합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모든 사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는데 제일 최장기가 36이라는 거지 기본이 36개월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3개월마다 점검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지금 최장기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축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짧게 단축을 시켜 놓고 본인의 책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위원회의 심사 동의를 전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정부 법안도 3개월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건데, 다만 현재 결정 취지는 상한을 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안 뒀던 것을 현재가 탓하는 것이겠지 정말 특수한 사정의 경우에 불가피해서 이것을 끝까지 가는 것까지 금지를 하는 조항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테러분자였다든가 형을 마치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 국가에서 안 받는다는 이유로 국내에다 풀어 두고 우리가 수용하고 살라고 현재가 요구하는 개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무기한도 가능하게끔—특수한 요건하에—그건 어떻냐 이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다만 일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36개월 내에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박균택 위원 아니아니, 해결을 못 했을 때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의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니까 그 경우는 나는 더 길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면 기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요건을 전제로 그러는 거지요. 그 사유가 우리 정부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대국이나 처분 대상자의 물리적 저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출국, 퇴출을 못 시킬 때 그때는 끝까지도 갈 수 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현재에서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상한을둬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결정 취지에 비춰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일체의 제한 규정을 안 뒀던 것에 대한 비판 아니었을까요, 현재 결정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였을까요, 현재 얘기가?

○서영교 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하면, 아까 10명을 내보냈는데 6명은 내보냈고 못 내보낸 사람 4명은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저희들이 와서 어쨌든 다시 설득을 하고 또다시 2차, 3차로 집행을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영교 위원 비행기에서 난동 피운 사람은 현행법으로 체포하거나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굉장히 승객들한테 어떤 상처를 입혔다든지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피해가 있어야지 경찰이 와서 그걸 현행법으로 하지, 단지 저희 직원들하고 대부분 몸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퇴거명령을 내린 자인데 안 간다 그러면 그 벌칙은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방법이 없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거기에 대한 벌칙은 따로 없습니다. 송환 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게 저희들의 방법입니다.

○유상범 위원 사실은 거기서 벌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취지는, 박균택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해당 범죄자의 본국에서 송환을 계속 거부해서 그게 해소되지 않는 요건,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추가하고 그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현재가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절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평계 대고 해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대범죄가 아니고 본국에서 송환 거부하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자꾸 그런 평계 대지 말고 어떻게든 제한을 두라는 거지만, 그렇게 해소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3년 후에는 한국에다가 그냥 살도록 해 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못 보냈을 때.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풀려났을 때 도주나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시 보호는 가능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본국에서 거부하는 것들은 18개월이든 36개월이든 그 안에 과연 해결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18개월 동안 해결 안 됐는데 36개월 안에 그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풀어 줄 거냐, 한국에서…… 그거 해결 안 되면 풀어 줄 거라면 18개월 동안 노력하시고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박균택 위원님처럼 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죽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가 그것까지도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도 두 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오전 중에도 동일한 취지로 내가 물어봤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이랑 같이 그렇게 입법화했을 때 현재 결정에 반하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도 한 말씀 올리자면요, 기본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호유치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호유치를 안 했을 경우에 막 돌아다니면 잡으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을 하게 되면 보호유치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3개월 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일 텐데 집행을 하는데 불능에 이르지 않은 장애 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태워 보내려고 하는데 난동을 부린다랄지 그다음에 본국에서 입국을 거부한다랄지 그런 집행장애사유가 생기게 되면 할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3개월마다 연장하는 데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와 같이 계속 3개월 동안 집행장애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언젠가는 집행 불능의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 동안 집행장애사유가 생기는 상황일 텐데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6개월이 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집행 불능이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러면 집행 불능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상범 위원 집행 불능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망하면 집행 불능이지. 그 전에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동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되는데 본국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라고 해서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보낸 사례가 있는지, 그 경우에 도대체 그렇게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는 데 최장 얼마가 걸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한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거의 테러 저지르려 왔거나 아니면 간첩죄에 걸려 가지고 왔는데 저쪽에서도 안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한 30개월 걸려서, 한 3년 걸려서 결국은 보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대부분은 다 난민 신청한 분들 때문에 사실 18개월, 2년 가까이 걸리는 거고.

중대범죄, 우리가 그렇게 상상은 해 볼 수 있고 상정은 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중대범죄 때문에 우리가 보내려고 했는데 상대국에서 못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안 된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안 되더라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런데 노력했더니 진짜 힘들게 우리가 3년 만에 아니면 4년 만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걸 좀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뭘 좀 체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상정해 놓고 하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상범 위원** 일단 기간은 따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또요?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사실 공부를 좀 덜 했는데 들어야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안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열일곱 살짜리, 금방은 대개 성범죄·테러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열일곱 살짜리가 퇴거명령을 받고 이 친구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미성년이라서 난민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구금할 수 있느냐, 이 구금의 기한을 처음에 20일 그다음에 40일, 40일…… 우리가 구금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 살짜리 아기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19일 동안 구금이 된 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되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 기사에 보니까 박주민 의원은 이런 취지로 현재가 구금 한도를 정하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계명대 여대생 성폭력, 스리랑카 성폭력이자 살인범 애들은 추방시켰어요. 스리랑카로 다 갔거든요, 그때.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경우, 어려운 경우에는 한도를 더 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구금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여기 와서 살고자 하는데 난민처럼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취지이고, 그러면 그런 그룹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이거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 사례와…… 그런 다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잘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한쪽은 최장 100일밖에 안 되고 한쪽은 36개월이니까 그걸 잘 믹스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갓난아기 같은 경우, 저희가 14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통 모친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호 해제를하거나 일시 해제를하거나 해서 웬만하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갈 데가 없고, 엄동설한에 외국인 여성의 애를 데리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여기 보호소에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동의를 받고 갓난아기들하고 같이, 그렇다고 애하고 부모를 떼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마 1년에 진짜 한두 건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보호인 입장에서 가령 임산부라든지 중환자라든지 갓난아기들이 시설도 없는 그런 보호시설에서 같이 있는 게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오늘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법무부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49쪽 보면 기간에 따른 보호인원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유를 차회에 한번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박주민 의원님 쪽으로부터 8년 동안 이의신청에 대해서 단 한 건의 인용이 없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마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성년자 아이에 대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 본국으로 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만 상정하지 마시고 체류자 중에 아마 여러 가지 경로로 한국에 있어야 될 만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은 본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양쪽을 두루두루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은 통과시킬 만한 논의가 모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논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혁·박균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3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도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균택 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개월 제한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 난동을 부리거나 본국에서 입국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현재가 금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금지는 자의적 수용기간의 무제한적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입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특별한 사정 있으면……

○유상범 위원 나는 그것 절대 현재의 결정에 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 대신에 평소에 일반적인 사법률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면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야 오해를 안 받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인권 관념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18개월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수긍하기 힘들지만 중대범죄를 굳이 36개월로 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과연 1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저는 지금 18개월, 36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한 가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준수하기 위한 보완 규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면 심리의 필요성 같은 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1소위에서 21대 끝날 무렵에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1200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1소위 법안이 진짜……

○유상범 위원 어렵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많이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항은 지금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하고요. 17항, 36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하는데 16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다른 건 다 정리가 됐고요.

5쪽에 제78조의2제4항과 관련돼서 후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아까 법원의 의견이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도 동의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히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 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유상범 위원 법무부,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및 36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15시12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34항 및 35항, 2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일준 의원님과 장동혁 의원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제1항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법에 따르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현행법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려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살인미수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은 법무부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약식명령 고지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입니다.

현행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만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사의 처분 현황을 보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고 부처의 의견은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쪽입니다.

검사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 청구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수범 내용이 개정될 경우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중상해범죄 및 상습범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은 법무부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적 기관이 조기에 개입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보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라는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응급조치로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생활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격리하거나 또는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피해아동 등의 복리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은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경찰청이,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범죄경력 조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범죄경력 조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범죄경력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7쪽에 보시면 9항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쯤에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후 법무부 측과 논의한 결과 ‘관련’이라는 말보다는, 관련은 약간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으로 폭을 조금 넓혀서 아동학대는 관련이 없고 마약류나 특별하게 다른 범죄경력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임시조치를 일정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임시조치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실무상에서 이미 검사가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연장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부처인 법무부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7번,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입니다.

이는 검사의 피해아동 등에 보호명령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의견진술, 보호명령 취소, 변경 신청, 기간 종료 통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쪽 현행을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직권이나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에게도 이러한 청구권을 부여해서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현행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활성화와 그리고 일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법무부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마지막, 시행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수범에 대한 건데 서일준 의원님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동혁 의원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과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조금 구별해서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의 9항, 범죄경력 조회가 어떻게 좀 더 수정되었는지 한 번만 더……

○**전문위원 박동찬** 9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 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부처랑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였는데 이후에 법무부 쪽에서 ‘관련’이라고 쓰니까 내용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유사한 관련된 범죄경력만 하는 것으로 조금 좁혀질 우려가 있어서, 연고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특히 마약류나 그 밖의 범죄에 대한 경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라는 용어보다는 이걸 ‘등’으로 바꾸고 앞에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이렇게 범죄명과 ‘관련’이라는 용어를 빼고 ‘등’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저희도 판단하건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경력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관련’을 ‘등’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관이랑 다시 얘기하면서 한번 들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전문위원 박동찬** 한 번 더 기관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은 여기 주신 바와 같은데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각 항별로 논의가 없는 건 논의가 없는 걸로 빨리빨리 확정 짓고 논의가 있는 게 두 개인가 세 개 조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의견을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게 낫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기관 의견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1항에 대해서, 의견은 여기 똑같으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 개정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의견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치사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어떠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박균택 위원** 1항 살인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살인이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1항이 살해고 2항이 치사인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식명령 고지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그 전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은 처벌을 못 했나요?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뭐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살해미수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살해 미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살해하려다 실패한 게 미수지.

○**소위원장 김승원** 살인의 고의를 갖고……

○**박균택 위원** 치사죄가 따로 있는 걸 보면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 계속 학대를 해 오다가 마지막에 고의를 가지고 죽인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차원을 넘어서는, 고의가 껴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를 하다가 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수가 뭔지……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수 규정을 안 두면 그냥 형법상 살인죄의 미수로만 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아동학대살인에 미수죄를 두게 되면 조금 더 높게 처벌할 수 있는, 옛날에도 처벌은 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좀 더 높게 처벌하기 위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아동학대법에다 넣어서 미수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미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인이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아동학대처벌법 1·2·3을 만들어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각도 못 했어요,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지. 그러면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미수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서, 당연히 아동학대는 처벌돼야 되고 그 미수도 처벌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법이 그렇게 돼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고 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유상범 위원** 우리가 애한테 수건을 딱 써웠어요. 이런애한테 수건을 써워서 딱 했는데

애가 순간 숨을 안 쉴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손을 뻗는데 나중에 살아난 거야. 그게 미수지.

○서영교 위원 그러면 개는 아동학대로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미수는 여기서 처벌은 안 됐으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아동학대살인 미수니까 아동학대 행위가 살인 행위에 포괄시켜서 한 죄가 되는 거지, 그게 학대 행위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박준택 위원 평소에 아마 이게 없었을 때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고 나중에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을 따로 떼어서 살인미수죄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다만 그중에서, 학대 중에 이런 행위가 오면 아동학대살인 미수로 가는 거지.

○서영교 위원 수건으로 꾹 눌렀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라고 하면…… 이거 보다 보니 충분히 미수다 그래서 처벌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그냥 살인미수로만, 형이 낮아서.

○서영교 위원 살인미수가 형이 더 낮다 이거예요?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이걸 더 높이는……

○박준택 위원 형법으로 처벌하던 것을 아동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살인미수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요, 아동학대살인 미수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장동혁 위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아동학대살해 미수는 예컨대 20일을 짚긴다거나 때린다거나 정말 살해의 고의를 갖고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네요.

○유상범 위원 20일을 짚기면 어른도 죽어.

○서영교 위원 그런 정도 되면 아동학대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동학대살인 미수로 간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래서 최하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게. 필요한 법률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 기관 다 동의하시고.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장동혁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없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건 뭐……

○장동혁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법률 개정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조항인데 특별한 이의 없으신

것 같고요.

○**유상범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네 번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법안도……

○**장동혁 위원** 관련 법에 따라서 일부 수정의견.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면요, 저희 전체적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좀 보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대상자 중에요 11쪽 후단을 보시면,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감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위탁의 주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교육감은 삭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수정안으로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설명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승원** 아, 수정의견에.

○**장동혁 위원** 수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항입니다. 응급조치 규정인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는 네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있고요,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있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연고자가 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혹시 아동학대범죄라든지 가정폭력범죄, 안 그러면 마약범죄라든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인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 자체를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경찰청에서 우려하는 바는 반영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범죄경력을 다 조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읽혀지는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모든 범죄경력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10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규정하기로 하고. 사실 무관한 범죄경력까지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하기로는…… 기본적으로 행위를 제지하고 격리하고 인도하는 게 그동안 응급조치였는데 추가가 된 것은 인도자한테 보내는 건데 인도자가 쉽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우려는 인도자가 인도 거부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인도 거부하면 인도 안 하면 되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의적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삼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연고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본인이 연고자가 누군지 사실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상당 기간 데리고 있고 그러면서 연고자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 그런 점에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이게 유의미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 만드는 과정에 경찰하고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연고자한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찰이 부정적인 입장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인도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대통령령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10항에 위임을 받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경찰 입장에서는 만일 근처에 누군가, 바로 옆에 이모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산다 그런다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우려되는 건 그거지요. 그와 같은 경찰의 추가적 노력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은 우리가 규정은 넣지만 형해화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도 법에다라도 넣어 놔야 경찰이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넣어 놔야지.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요.

대통령령으로 생각하는 연고자…… 연고자라는 개념이 이 법안에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연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이성윤 위원** 제가 경찰이라 하더라도 우선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 같은데, 피해아동을 어디에 맡길 데 없으면…… 장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야 되지 대통령령에다가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으면 경찰들이 자기들이 편할 데, 자신들이 편할 곳으로 인도를 하지 않을까요? 연고자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한다든가?

○**법무부차관 김석우** 참고로 연고자라고 하는 표현을 아동보호심판규칙이라든지 특례법 관련된 부분에 일부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친족이라든지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

망하는 사람, 이를 주로 연고자 등이라고 아동보호심판규칙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한번 합리적인 범위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되겠네. 대통령령에다가 하여튼 그 규정을 좀 잘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경찰 이야기를, 경찰이 와 계시는데 그쪽으로부터 좀 들어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이것 때문에 오신 건가?

○**소위원장 김승원** 성폭력 때문에 아마……

○**유상범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오셨어요.

○**서영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없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전공이 달라서.

○**서영교 위원** 경찰이 왜 그것을 걱정하는지를 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자료 22페이지에 있는데요 보고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 대하여 응급조치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아동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단기적·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고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추가되면 연고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인도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으로 인하여 신속한 보호·인계가 어려울 수 있어 보호시설 인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며 성질상 응급조치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당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되는 응급조치도 아동복지법상 27조의3의 응급조치 거부 금지 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서영교 위원** 요점으로 얘기해 보세요, 읽는 거 말고요.

○**전문위원 박동찬** 요점이라면 실무적으로 연고자를 본인들이 업무상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장동혁 위원** 부담이지요.

○**유상범 위원** 그 부담을 지기 싫다는 거지.

○**전문위원 박동찬** 보호시설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부담이 크고 신속한 보호·인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습니다.

○**장동혁 위원** 신속한 보호라는 건 그냥 그렇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싫다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동이 학대를 받아서, 주로 엄마·아빠가 하잖아요. 의붓 엄마·아빠가 하거든요. 그런데 응급조치로는 아이를 72시간 내에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가 원래 법이었어요.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엄마·아빠가 아동학대를 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원칙이 원가정 원칙이에요,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냈더니 그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예요. 또 패 가지고 애가 끝내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게 일곱 살짜리 아기가 있었는데 개를 계속 때렸는데, 분리시켰는데 다시 원가정으로 보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응급조치에는 가장 안전한 보호시설, 가장 안전한 시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시설로 보낸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 최근에 개정되었던 내용일 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그게 3호네요, 3호.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2·3·4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5번에 연고자가 있다면 그 연고자에게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붓아버지나 이런 쪽이 아니라 엄마는 친엄마인데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야, 그러면 아까 말한 엄마의, 이모 이런 쪽은 훨씬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꼭 연고자가 우선순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러 응급조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냥 보호센터로 보내기보다는 연고자가 있어서, 연고자가 고모, 할머니, 이런 쪽이 있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인 거잖아요.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9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력을 했던 부모에게 다시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고모나 이모한테도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좀 위협이……

○**서영교 위원** 뭐가 있을 때는……

○**장동혁 위원** 범죄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배제하고, 그래서 보낼 연고자가 없으면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고자가 거부하면 안 보내도 되는 거고.

경찰 의견 중에 이게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응급조치를 거부했을 때 이걸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건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고. 아동복지법상의 응급조치 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했을 때 이 시설은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안 했을 때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그런 규정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새로 성안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인 연고자한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거부했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이라는 측면은 임의적인 인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에 인도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보호기관이나 의료기관은 아주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이를 잘 돌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연고자가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고 경찰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부한다, 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응급조치니까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서영교 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응급조치로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장기적으로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함에 따라서 연고자로 갈 수 있는 내용…… 그

런데 연고자는 바로 찾을 수 없고 이런 조사까지 해야 되니 응급조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전문위원 박동찬 응급조치라는 의미는 하여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선택지를 넓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동찬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의미이고 경찰이 이야기하는 건 응급으로하기에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아무래도……

○유상범 위원 그런데 바로 집 근처에 할머니가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선택지로 넣어 주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요, 보호시설 가는 것보다.

○서영교 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연고자에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항은 의문이 다 해소되셨고요.

6항,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부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아까 법원은 ‘고지’를 ‘고지 또는 통지’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자구 수정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자구 수정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준용규정에서 ‘고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통지’라는 용어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을 기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지’로 해야 준용규정하고 정합성이 일치된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 그런데 원래 법안을 성안할 때 통상 이와 같은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와 같은 인권 구제적 역할은 검사에게 다 부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검사에게 권한 부여를 안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또 검사를 넣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필요성이나? 이 법안 성안 담당한 공무원이 누구지요?

아니, 법안 자체는 찬성은 해요. 검사가 갖고 있는 권익 대변자의 역할로서 검사가 늘 들어가 있었는데 왜 그전 법에는 이게 빠졌는지, 그러다가 뒤늦게 들어오려면 뭔가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적극적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이 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임시조치를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검사가 청구권이 있고 그 이후에 연장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청구권이 없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특별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겼다기보다 다른 법률과 형평성상, 스토킹처벌법에도 이런 조치에 대한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네.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는 서일준 의원님, 장동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라……

○**유상범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28쪽 일곱 번째,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규정인데요.

기관에서도 찬성하시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법무부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항, 시행일에 대해서 기관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발의하신 두 의원님 안이 좀 다른데……

○**장동혁 위원** 그러면 법무부든, 즉시 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시행령 만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는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둔 건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약간 여유를 주시면 훨씬 더 실무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에서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면 바로 시행보다는 공포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상범 위원** 장동혁 위원님께서 다 예상하고 6개월로 한 것 아니에요?

○**장동혁 위원** 아무 상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6개월이 있고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 기관에서 자꾸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런데 참고로 서일준 의원안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그 규정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 조항만 들어가 있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것만 하는 부분이라서 장동혁 의원안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건 아니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유상범 위원** 장동혁 의원안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미수범은 그날로 하면 되겠네요.

○**유상범 위원** 여기 장동혁 의원안이 그거예요, 미수범은 그날로 한다, 공포한 날부터.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도 국민에게 좀 알려 주는 효과는, 알려 주긴 해야 돼서 6개월로 하시면 어떨까요?

○**유상범 위원** 예.

○**장동혁 위원** 예.

○**서영교 위원** 국민에게 뭘 알려 줘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해서 더 가중 처벌하겠다는 일반적인……

○**유상범 위원** 법안이 시행될 때 대통령령도 같이 시행돼야 되니까……

○**서영교 위원** 미수범을 빨리 처벌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알고는 처벌받아야지요. 본인이 어떤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미수범을 빨리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미수범……

○**장동혁 위원** 그거는 즉시 시행으로 돼 있어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즉시 시행이 좋겠다는 건데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6개월 이후에……

○**유상범 위원** 아니에요.

○**장동혁 위원**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즉시 시행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바로 하신다고요?

○**서영교 위원** 예.

○**장동혁 위원** 그거는 즉시 시행으로 돼 있어요.

○**서영교 위원** 그거는 즉시 시행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지요.

○**유상범 위원** 미수범은 즉시 시행으로 돼 있어요.

○**장동혁 위원** 나머지만 6개월, 1년.

○**소위원장 김승원** 아, 6개월 시행하고 즉시 시행이 있고 1년 후 시행이 있네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미수범은 즉시 시행하고 다른 거는 조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유상범 위원** 법원 같은 경우에 약식명령에 병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꼭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것 6개월로 하셔도 저희가 그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봐서 그거는 시행령이나 규칙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6개월 하고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로 바꾸면 되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바꾸면 되지요.

○**서영교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서영교 위원 아동학대는 즉시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시행 시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거는 그 치료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유상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가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유상범 위원 8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부과하게 되면 약식명령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그 정도……

○유상범 위원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보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여기 부칙에는 1년 정도를 주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 유지해 달라는 얘기인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장동혁 위원 결론은 제 원안대로 하자는 건데……

○유상범 위원 뒤에서 고개 까딱거리는 분은 누구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1년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6개월로 했다가 바꿔야 되잖아.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제가 여성아동인권과장이어서 주무 담당 부장인데요.

저희가 법안 하는 과정 중에 이수명령 관련해 가지고는 치료처우과가 협조 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처우과에서 이수명령 수요…… 왜냐하면 약식명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까지는 6개월이 약간 좀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1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원안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원안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냥 6개월로 하면 되겠구먼. 이런 걸 뭘 질질 끌고 그래요.

○유상범 위원 미수범은 그냥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약식명령에 이수하는 것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대상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서영교 위원 빨리빨리 하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님 특별히 빨리빨리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꼭 속기록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이 계셔요.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록만 보면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장인 줄 알겠어요.

(웃음소리)

경고합니다.

○유상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아니, 1년 이내에, 6개월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를 파악

할 때 꼭 1년……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1년으로 늘려서, 수요 파악한다고 1년 더 달라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6개월 이내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식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만 건입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지 않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보니까 몇백 건이던데, 한 200건인가요?

○**이성윤 위원** 더군다나 아동학대 사건은 약식명령 거의 안 하잖아요.

○**장동혁 위원** 하여튼 6개월로 하고 서둘러서 준비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약식이 918건으로 돼 있는데 이수명령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그 중에 이수명령 부과 처분까지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겠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이수명령은 실형을 받거나 벌금을 받은 사람한테 부과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한테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는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과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는 도입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918명 전원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절반이나 그 이하일 것 같은데 좀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은 무책임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담당 과장님께 6개월 안에 가능 한지 물어봐야지.

○**장동혁 위원** 아무래도 힘들어요?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예,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수명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동학대처벌법은 못 하고 있지만 성폭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은 다, 아무래도 벌금 그냥 내는 것보다는 이수명령을 들어야지 조금이라도 훈육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약식명령을 하더라도 아마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검사들은 다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담당 과장님 성함을 말씀하셨나요?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김수민 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를 위해서, 정확하게 어디 과장님 이신가요?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수민 과장님 이시고.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수명령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거의 다 내려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미 다른 법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단 기관이라든가 이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수명령 포인트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 봅니다만.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사실 법률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식명령 프로그램 짜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는 법무부 처우개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법안이 21대에도 저희가 정부안으로 한 번 제출을 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6개월로 했더니 처우개선과에서 너무 기간이 짧다, 좀 더 늘려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른 것들은 최대 6개월로 시행을 하되 약식 명령 관련된 이수명령 이 부분만 1년으로 좀 늘린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장동혁 위원님 원안대로 갑시다.

○**장동혁 위원** 잘 준비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법의 취지를 보면 아까 아동학대살인 미수도 즉시 시행했듯이 사실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라든가 보호자한테 이수명령, 빨리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6개월 늦어지면, 여기 보니까 900건이면 한 400명이 이수명령 없이 그냥 벌금 내고 끝난다는 거잖아요.

○**유상범 위원** 이수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그때 이수명령을 받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건데……

○**유상범 위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소위원장 김승원** 이럴 때는 그러면 9개월로 해요?

○**유상범 위원** 해 주세요, 해 주는 게 맞고. 원안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법안을 내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 때문에 우리가 소신이 여러 번 바뀌었어.

○**소위원장 김승원** 이미 2시간 가까이 되어서 이것 통과시키고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4항 및 3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8)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27항 및 28항,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27항, 28항입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에 11월 5일 날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 논의의 경과를 적어 놓은 거고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3쪽에 9월 24일 날 1차 심사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4쪽 조문별 심사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와 법원이 별건수사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 별건수사 금지 위반 시 처벌조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의견으로 삭제 의견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냈고요.

그다음에 5쪽, 표적수사 금지조항 신설에 관해서 이건태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으로 문구 조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항인데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특정인을 쳐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문구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이것도 별건·표적 수사 금지 위반 시 판사의 영장 기각을 의무화하는 이건태 의원안이었는데요.

별건·표적 수사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서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게 기각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6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수사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수사기관의 책무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를 해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됐으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검사의 책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면 그 사건 수사는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 때 있어서 관련 사건의 어떤 객관적인 단서가 드러났을 때는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저희가 안을 한번, 수정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특정인을 쳐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무분별한 표적수사의 문제는 취지상 지양될 수가 있고, 아울러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여죄 수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돼서 기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표적수사 금지의 선언적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서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더 법령상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처럼 현재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정을 제안했고요.

사실은 준수사항에다가 영장의 일부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정합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조항을 구속영장과 관련되는 데만 부과를 한다면, 사실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도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가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준수사항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6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7페이지의 표적수사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안은 사료라든가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아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민주당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이 표적수사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해서 한 분씩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게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라는 내용을 보면 다른 범죄 혐의 유무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느낌이 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문구 자체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비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또는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높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제안해 드린 이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단서 없이 막연한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

셔서 그러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약간 객관적인 단서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안을 저희가 법무·검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혹시 배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을 지금?

○**유상범 위원** 별 차이 없어요, 문구 살짝 수정하는 거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문구를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민주당 위원님 쪽에서 한 분 토론해 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저도 법무부 수정안이 새로 추가 수정안까지 나온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렇게 ‘사료’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면 결국은 검사 자의적으로 다시 수사를 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토의 때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례들은 이건태 의원안처럼 정당한 모든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으로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를 넣을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태 의원안이 현재 법령에 더 맞고 정합성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서면으로 정리한 것은 저희 실장님이 받아서 배포는 해 주시고요. 논의 여부는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적수사 금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 6항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건태 의원안은 필요적 영장 기각 사유로 했고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의 고려 사유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같은 유사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영장의 발부 사유, 기각 사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관의 자유심증이나 재량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의 타당성하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표적수사라는 말의 개념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영장의 기각 사유로 넣어 놓으면 그러면 적법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규정들도 다 기각 사유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과 관련된 규정이 너무 난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의견은 아예 이것은 영장 사유의 어떤 규정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절차의 일환으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뭔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그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주당 쪽에서……

○서영교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현희 위원님 말씀 안 하십니까?

○전현희 위원 예,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원이 영장을 너무 많이 발부해요. 그냥 다 발부하십니다. 그런데 민생 그리고 강도·강간 등 관련해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장을 계속 발부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별건수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말씀처럼 표적수사를 위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기각해야 됩니까, 안 기각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영장이 청구되면요?

○서영교 위원 예, 영장이 청구되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영장의 발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영장 발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법령상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여부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영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을 주의·환기시키고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그런 것 고려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장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리면, 별건수사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별건수사로 영장 청구했어요. 그러면 영장 발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각해야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영장……

○서영교 위원 기각해야 되잖아요. 표적수사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로 만든 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원래 별건의 4항에는 합리적으로 근거 없이 별개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자백이나 진술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이건데 의원이 낸 것보다 현재가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백이나 이런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할 때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법원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수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괜찮은 것 같겠으나 일대 변화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별건·표적, 그것은 불법이야. 그러면 영장을 기각해야 돼’ 이게 당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각하여야 한다’로 정리를 하는 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별건수사의 처벌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정리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유상범 위원 지금 별건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의 규정에 갑자기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정합성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별건수사 또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써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는 주의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 규정에 위반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가 형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있는데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별도로 주의의무 규정에다가 형사처벌 규정을 넣는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은 전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형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벌칙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입법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입법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법원행정처장님 입장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종전에도 저희가 피력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건수사의 금지를 수사의 준수사항으로 선언하는 부분은 저희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까지 둘 것인가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 체계의 정합성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국 어떤 금지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죄형법정주의인데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좀 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이 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다 하신 건가요?

○ 유상범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저도 잠깐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4항에 대해서, 별건수사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이 정의 규정은 거의 우리 교과서에 실린 그 내용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준수할 대상은 수사 공무원이겠지요?

○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지만 일종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조항으로, 약간 행정처벌 조항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일반 국민에 대해 그것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조항을 둔 건데 그래서 그런가 법정형도 2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당히 낮은 편에는 속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 의무에 대한 위반 시에 처벌조항을 두는 약간 행정형벌적 성격이 있어서 다른 유사한 행정처벌조항과 비교를 해 보면 명확성의 원칙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물론 형량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비해서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선 체계 정합성에 있어서 형법으로 처벌해야 될 것이 소송법에 들어와 있는 측면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처벌성을 갖게 된다면 규정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규정은 수사의 준수사항으로서 약간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처벌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이게 준수사항인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수정안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저희가 항상 읽어 봤던 교과서에 있었던 별건수사 금지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담긴 건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여기 말씀 듣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이 수정의견이 합의가 된 건가요?

○이성윤 위원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별건수사가 지금 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검찰의 별건수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검찰수사 받다가 엉뚱하게 별건수사로 기소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기준에 별건수사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은 고쳐지지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나 이런 자격정지 규정을 넣자는 게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겁니다. 검찰이 별건수사 안 하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이것을 못 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

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건수사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반드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게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처벌규정을 넣는 게?

지금 그런 필요성은 있잖아요. 별건수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제재하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이게 막아질 수…… 그나마, 다른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똑같잖아요, 사실은. 다 선언적 규정이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별건수사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준수를 못 했을 경우에 그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입법적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 선언적인, 준수사항의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위반을 좀 더 구체화하고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했을 때 좀 더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의 충론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처벌규정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처벌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려고 이 법안을 들고 온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처벌규정을 넣을 때 1번이 뭐냐 하면 새로운 행위가 나왔는데 범죄 처벌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처벌규정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차장도 그렇고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만일 이와 같은 규정에서 별건수사를 했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련 없는 사건에 자백을 받는 행위가 드러나면 이것은 주의의무 규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게 돼서 입증이 되면 그 수사를 한 수사경찰관 또는 검사는 당연히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이 주의의무 위반이 되면 직권남용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 거거든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의무 규정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이유로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처벌규정을 넣는다, 이것은 기본적 형벌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처벌 못 합니까? 처벌하잖아요.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된다는 건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처벌규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규정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처벌규정에다 중복적으로 또 이 규정을 넣는다, 더 경한 법정형을 정해서?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갖고 있는 그 염중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 규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처벌규정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생각을 해 보세요. 전현희 위원님, 이 법 위반하면 직권남용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전현희 위원** 여지는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 예,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별건수사죄를 그대로 거기에 포섭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다 보이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여러분께서 별건수사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게 별도로 고발된 사건이 있거나 별도로 고소된 게 있거나 그러면 그 사건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별건수사의 비난을 하기는 하는 건데 고소·고발된 거나 증거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이 사람을 꼭 처벌하기 위해서 전혀 없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이런 경우는 보셨습니까?

○**전현희 위원** 그동안 별건수사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한 적도 없고.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은 뭐냐 하면 여죄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건 수사를 하는데 거기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자료 같은 것이,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단서가 나왔으면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잖아요. 즉 절도죄, 절도범을 조사하는 와중에 압수물에 피 묻은 식칼이 나왔다든가 또는 핸드폰에 성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 사건 수사는 여죄수사 아닙니까? 그 여죄수사는 다 인정해야지요.

또 보십시오. 횡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별건으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배임이나 다른 고소·고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고소·고발이 있으면……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단서가 있고, 그런데……

○**서영교 위원** 고소·고발하고 단서는 다르지요.

○**유상범 위원** 그게 단서예요, 그 수사의 단서.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있으면 안 할 수는 없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죄수사라는 것이 그런 증거자료가 확보됐을 때 하는 수사 그다음에 고소나 고발처럼 수사의 단서가 있는 수사,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이와 같이 수사를 했으면 이건 다시 직권남용이 되지요. 처벌규정이 있는 것에서 그것보다 경한 또 새로운 별칙 조항을 넣는다는 게 맞지 않으니까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여죄수사를 다 금지하고 그걸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죄수사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당하게 합리적인 근거 없이 표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을 하려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려는 거고 그래서 직권남용죄와는 조금은 차별성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권남용으로 별건수사죄를 의율해서 처벌한 예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 유상범 위원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별건수사와 여죄수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이고, 여죄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론의 여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건태 의원안의 5항에서 저희가……

○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조금 이따 바로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시고요? 5항은 마지막 법무부 안을 토론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저는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조항과 관련돼서.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5항에 대해서 법무부의 새로운 대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유상범 위원 이건태 의원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협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이 규정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협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죄 수사를 해 가지고 범죄 협의가 드러나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다음 후단 조항인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협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수사의 단서가 있는 즉, 증거나 자료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하면 마치 수사를 할 수 없는 가능성 있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다 인정한 여죄수사나 또는 별도의 고소·고발이 있는 그런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형사 소송법이 갖고 있는 주의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난번에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가 협의해서 여기에 합당한 여죄수사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비를 하자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왔는데, 다만 그때 제출된 수정안 중에서 ‘범죄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렇게 하면서, 사료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그 당시 서영교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제안된 게 아마 그러한 주관적 판단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여죄수사는 허용된다는 문구를 정리한 것이 이 수정안 5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장이랑 차관께 다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 규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꼭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단어가 필요한가요?

○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에 저희가 ‘합리적 근거’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제가 오늘 배포해 드린 문건에 있는 수정의견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세 번째 줄에 등장하고요.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사의 단서’, 객관적 단서에 비중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합리적 근거 없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조하는 의미고요. 이 문건의 핵심은 ‘객관적’하고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연하게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거 다라고 하는 주관적·자의적인 추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 규정으로 분명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번에 사료된다는 부분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좀 더 객관화한 표현으로서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사의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완한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한번 보시고, 만일 이 수정안이라면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여죄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입장이고, 그 의견을 한번…… 여기 다 법률전문가시고 또 굉장히 통찰력이 많으신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5항은 준수 사항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김승원** 준수 사항이라 아까 차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명확성의 원칙보다는 5 항 자체의 문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쪽에 집중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민주당 위원님 중에 5항에 대해서 이건태 의원님안 그리고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이건태 의원안의 5항, 법원행정처 차장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태 의원님 안의 5항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A라는 범죄와 B라는 범죄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정의견은 A라는 범죄와 B라는 범죄를 구별해서 설시한 것 같고요, 이건태 의원안은 A·B 범죄를 모두 포괄해서 기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A·B 범죄를 포괄해서 서술을 하다 보니 여죄수사를 못하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여죄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A, B를 분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한 것이 수정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죄수사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죄수사가 어떤 사례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약수사를 하다가 칼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랄지…… 사실 이 논의는 거기서부터 출발됐었던 것 같거든요.

○**서영교 위원** 거기서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5항이 마약을 수사하다가 마약수사가 드러났…… 마약을 수사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방법에 따라 마약 관련해서도 범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살인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정인을 향해서 계속한다면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얘기지, 마약을 수사하다가 살인이 나왔는데 수사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여기 5항에 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만 수사의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못 한다라고 읽힐 여지가 조금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아마 규정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혼용돼 있지 않아요. 이 내용에는 A와 B가 혼용되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수사를 하다가, 수사해서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수사는 거기서 끝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이 이야기인 것인데……

그다음에 법무부 안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법무부 안에서 굳이, 왜 굳이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느냐 이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혹시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법무부 안, 지난번에 뭐라고 해 오셨지요?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범죄는 할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것을 막아 놓으니까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지 아니함에도’, 이걸 넣을 거면 아예 이 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바꿔 온 말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여기에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사의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사의 단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우선 그것 한 가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분이 말은 객관적인 단서라고 했지만 지금 법무부가 가지고 온 것에는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라고,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 놓은 거예요.

마약을 수사하다가 피 묻은 칼이 나왔어요. 이건 객관적인 단서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그대로 객관적인 단서라고

포장을 할 뿐, 이 안에는 객관적인 단서라고 못 넣고 ‘객관적으로 의심되는’이라고 넣어왔고요.

그다음에 ‘함에도 특정인을 부당하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합리적인 근거는 또 뭐지요?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라고 하는 말을 객관적인 단서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건 또 무슨 말이지요?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시키시면 안 돼요. 마약수사를 하다가 피 묻은 칼이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요. 누가 이 별건수사에서 그것을 수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대기업을 수사하거나 기업을 수사하러 가서, 횡령 혐의를 수사하러 갔다가 여기에 배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그 컴퓨터 자료를 다 뒤져서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살하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경제 사범이에요. 그걸 넘어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정치인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 직권남용이 하나도 지금…… 직권남용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여기다 넣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검사도 그리고 법원도 자기 직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음에도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은 그럴싸하게 갖고 오셨지만 이 내용을 바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도 여죄의 부분, A와 B가 섞여 있어서 A와 B를 분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혹시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면……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잠시만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말씀은 들어 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은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단 사료라는 말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라는 말도 있고, 제106조(압수)에 보면 ‘필요한 때에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료라는 말이 형소법에 등장을 하고 대법원 판결도 사료라고 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사료라는 말이 약간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한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이 규정을 만들 때 제일 핵심이 바로 객관적인 것과 단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피 묻은 칼이 만약에 발견되면요, 여기에 왜 의심이라는 말

이 들어가느냐 하게 되면 피 묻은 칼이 발견되면 살인 혐의가 의심이 되는 거지요. 피 묻은 칼을 발견하는 순간에 바로 기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단서가 발견되면 그 단계는 의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시점, 바로 의심이기 때문에 다만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사의 단서’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책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례를 제가 간단히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대전고등법원 2015노201 판결에 의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피의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적법절차 내에서 이를 수사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점’이라는 판시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대구고등법원 2023노28 사건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전자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라고 해서 현재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죄의 단서가 발견됐는데 이걸 눈감고 지나치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만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단서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여죄가 있으면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다른 단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단서가 나오면 그걸 하라고…… 여기에 단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저는 제198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4항은 별건수사 금지, 5항은 여죄수사 중에, 이른바 표적수사에 해당하는 여죄수사는 금지한다는 규정으로 이해를 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별건수사 금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4항은 별건수사.

**○서영교 위원** 별건수사 금지 그리고 단서가 없으면 표적수사 안 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5항은 여죄수사 중에서 표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금지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죄수사가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다들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서영교 위원** 아니, 여기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에다가 다른 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넣는 게 이 조항에 맞냐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5항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건 아까 말한 것, 다른 조항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유상범 위원 그건 5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5항이에요, 5항.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건 5항에 들어갔습니다, 5항에.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5항은 표적수사를 금하는 준수 사항, 그런 선언적 사항이 될 텐데…… 5항 자체의 문언은 사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합성도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또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서영교 위원 이건태 의원안이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이건태 의원안이요.

그다음에 아까 마약 수사하다가 칼이 발견된 경우는 여기 5항에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수사해도 된다는 것으로……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해석이 안 되지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성윤 위원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칼이 발견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수사하는 데 저는 의문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낸 안 중에 예컨대 ‘수사의 단서’ 또 ‘부당하게’, ‘합리적 근거 없이’ 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금지하는 표적수사 금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대해서……

예컨대 수사의 단서라면 지금도, 서울시의원인가요? 이종배 씨가 수사하다가 뭐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고소장, 고발장 내 갖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든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제공받아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경우에 법무부의 대안은 그것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5항도 조금 손보면 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금지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범죄 혐의를 찾는 것, 계속 수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으로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얘기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특수부의 기획수사라든가 표적수사 그런 목적이 없으면 또 5항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그런 빠져나갈 구멍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5항 정도의 금지 조항은 선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짧게 하겠습니다.

기준에 이건태 의원님 안에 보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은 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 준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적법의 영역을 떠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법한데 부당한 것이 있고,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 있느냐라는 논란으로 비화가 되면…… 이 규정만 놓고 봤을 때는 적법하기는 한데 그러면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것은 판단하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혼선의 여지가 많고 특정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수사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약간 잘못 운영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걱정됩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정당한’을 ‘적법한’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저 5항을 봤을 때는…… 4항은 이해가 갑니다, 별건수사 금지.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잠깐…… ‘적법한’에 대해서도 정당과 부당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정당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먼저 눈에 띄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수용 가능하신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법한 여죄수사가 이 규정으로 인해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글쎄, 아무튼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게 형법 처벌 조항에도 들어가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판례에 의해서 축적이 되는 것 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수사기관에 대한 의무 준수 범위를, 그 절차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모호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법을 만들 때 정당한 절차라고 안 하고 적법 절차 준수라는 규정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하게 되면, 적법성 플러스 또 다른 부분까지 고려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형사소송 절차가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라고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않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당한’이라는 단어 자체는 ‘적법’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절도사건에서 피 묻은 칼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런 피 묻은 칼이 없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칼이 없음에도 애가 살인죄가 의심된다고 계속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것의 입법 취지는 원래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것의 범죄 혐의가 없는데 또 새로운 범죄를 찾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것 전단은 A범죄고 후단은 B범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지요, 간사님. 피 묻은 칼이 발견된 경우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난 경우지요. 그래서 그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이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규정하는 이유는 표적수사를 하지 말자고 규정하는 거고, 그 규정은 원래의 사건을 수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범죄를 막 물색해 가지고 찾아내서 계속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하는 그런 표적수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지 해석 자체를 이것을 마치 수사 단서 얘기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여죄수사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면 당연히 여죄수사가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은 다시 한번 잘 들었고요. 이것은 저희도 내부적인 회의를 한번……

○**유상범 위원** 회의를 같이 하고……

○**소위원장 김승원** 내부적인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의사일정은 잠시 보류를 하고 간첩죄로, 유상범 간사님께서……

○**서영교 위원** 뭘 보류하십니까, 다 이야기되고 끝난 거를? 하시고 가셔야지요. 별건수사 하면 안 된다고 다 동의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두 분이 퇴장하시겠다고 해서……

○**서영교 위원**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이성윤 위원** 하십시오. 결론 내리셔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장합니다.

○**이성윤 위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것 논의한 것이.

○**유상범 위원** 이성윤 위원님, 형사소송법 규정은 자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성윤 위원** 아니,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서영교 위원** 오늘은 유상범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빼고 온 겁니까? 저는 진짜 병원도 예약돼 있는데……

○**유상범 위원** 저도요 오늘 안 된다고 했는데 김승원 간사님이 결정해서 온 거예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병원도 지금 취소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유상범 위원**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세요?

○**서영교 위원** 우리 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출입국관리법, 다 여당 것만 되고.

○**유상범 위원** 그동안 1소위에서 통과된 법은 전부 민주당 법이었습니다.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왜 자꾸 나한테 그전 얘기……

○**유상범 위원** 오늘만 얘기할 게 아니지. 지난번에 서영교 위원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

마나 성폭력법 열심히 해 줬어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정말 특이한 분이야.

○유상범 위원 뭘 특이해.

○서영교 위원 오늘 그쪽 것 다 했으면 이쪽 것도 한 개 하고 그래야지.

○이성윤 위원 벌써 세 번째 논의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고 나가셔야지요.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지나면 다음에는 합리적·객관적, 다음에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모순 없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중에 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이 안은 저희가 정회할 때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17시09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1항부터 15항까지 1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 형법 일부개정안 15건 자료하고 자리에 간첩죄 관련 수정의견이라고 별지로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아야, 이것은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김승원 간첩죄 관련 수정의견 이걸 보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아니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안이 나오기 위해서 법무부와 법원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소위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의 15개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호영·장경태·위성락 의원 이렇게 세 분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올라왔고요. 나머지 12건이 같이 직회부되었습니다. 법안이 위낙 많기 때문에 3쪽부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 개요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98조에 있는데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방조하거나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무·7형, 즉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중간 부분에 있는 논의 필요 주요 쟁점을 보면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대체로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법에 명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고요. 산업기밀을 유출했을 때 그것을 간첩죄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해서 규정할 거냐 따로 규정할 거냐 그런 문제, 외환의 죄 장에 있어서 조문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외국 등을 위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의 내용 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쟁점으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안이 거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페이지 쟁점 및 검토의견을 보시면, 그러면 외국 등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성립도 인정해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기밀의 누설 상대방은 정부나 그런 정도 수준의 단체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을 위해서 간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간첩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외국이나 그 실질이 국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의 단체를 인정할 필요 이런 것을 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적국 개념을 아예 삭제하는 안이 있는데요. 적국 개념을 삭제하고 그냥 외국으로 대체할 거냐?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또 법정형도 외국을 위한 간첩과 적국을 위한 간첩이 침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형을 조금 더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 개념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입니다.

현행법상은 아시는 대로 간첩이나 간첩 방조, 군사기밀 누설 이런 것을 간첩행위로 하고 있고 판례상으로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이게 간첩으로 되어 있는데 형법상으로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형법에 담을 거냐 하

는 취지가 이 쟁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의 쟁점 보시면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거냐 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간첩행위로써 탐지·수집은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인데 누설·전달·중개도 간첩행위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판례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러나 단순히 누설·전달·중개가 그냥 그 행위 자체로 간첩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해 오던 적국과의 의사 연락하에 누설·전달·중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수정의견을 수정 조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의 의미도 학술상으로 실질비·형식비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규정할 거냐,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담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형법에서 국가기밀의 정의 규정까지 담는 것은 좀 보기 드물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현재의 결정례 등을 통해서 국가기밀의 개념이 이미 거의 확립된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는 단어만 남겨 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군사기밀도 여러 위원님들이 군사기밀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군사기밀도 국가기밀하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남겨 놓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16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차원은 인정되지만 산업기밀 유출이 국가기밀 침해 수준으로 높아지면 간첩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타법과의 관계에서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그게 방위산업이라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일단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법률이 우선돼서 적용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국 입법례로 미국은 경제간첩법이라고 해서 산업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별도의 간첩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형법에까지 산업기밀을 넣는 것은 약간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의 관계·통합과 외환의 죄 장과의 관계인데요.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별도로 규정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개념상 판례상 확립된 개념으로 봤을 때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나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남겨 놓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외국 등을 위한 간첩과 외환의 죄와의 관계 이것은 조문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외교 관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간첩죄로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4 개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9쪽에, 최근에 외교활동하고 정보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만약에 미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과연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언론으로부터 제기

됐습니다.

국익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런 정책적 영향력 부분을 인정하면 그 개념도 구성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간첩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는 각주 21번·22번에 제시돼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외국대리 인등록법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외국영향력투명성계획법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적인 영향력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그것을 어떤 별도 입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조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30쪽에 부칙 및 조문 체계 정리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조문 정리이고요. 부칙에 시행일이 마지막 끝에 있는데 시행일은 행정부나 법무부에서 타 법령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1년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은 쟁점별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정 수석, 이 수정안이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관과 협의해서?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기관의 의견을 여기 수정의견에 최대한 수렴해서 담았고요. 이론적으로 혹시 뭐……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유상범 간사님이 갖고 계신 것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건가요?

○**유상범 위원** 똑같은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저건 세로로 돼 있는……

○**유상범 위원** 이건 내가 검토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것은 98조, 98조의2만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 수석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논점을 같이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수정의견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정의견은 저희들이 법무부와 법원의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최대한 반영했고 약간의 이견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산업기밀이라든지 정책적 영향력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아까 정 수석께서 산업기밀이나 정책적 영향력을 간첩죄로 포괄시키게 되면 간첩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개념 정의도 어렵다, 그래서 각각의 사안은 별도의 법률안에 규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고.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그런 의견을 갖고 조율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행정처도 동의를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일단 3페이지로 된 간첩죄 관련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98조(간첩)가 바로 옆에 수정의견처럼 개정이 되면서 2항은 생략된 것인데요. 이 수정의견은 어느 개정안을 반영한 것입니까? 어느 분……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목은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사 연락하에 탐지와 수집을 하는 것이 간첩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간첩죄에서는 2항에 누설한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탐지·수집·누설을 전부 다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 연락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 연락 없이 탐지·수집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간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에 ‘의사 연락하에’라는 부분을 요청해서 이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 추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처 입장과 동일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첩의 개념이 원래 국어사전적으로 틈을 본다는 거기 때문에 탐지·수집에 국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설·전달·중개까지는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했던 영역인데 간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풀어서 쓰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라고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은 요건으로 규정은 안 돼 있었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당연히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비밀을 수집했다면 당연하게 간첩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의사 연락을, 지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목적을 하고—당시에는 없지만—비밀을 수집하면 그냥 간첩 예비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98조도 그렇고 98조의2도 그렇고 적국 혹은 외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들어온 부분 이런 것이 성립하게 되면 당연하게 기수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데 나중에 외국으로부터 그런 사주를 받겠다라는 목적하에 비밀을 수집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 간첩 예비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 기존에 해석상 인정됐던 부분을 보다 명문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적국의 개념은 어디서 규정할 수 있나요? 국방백서에서 나오는 겁니까? 적국의 개념은 뭘까요?

○**장동혁 위원** 원래 현행도 ‘적국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지령, 사주 이것은 ‘지령’ 하니까 좀 옛날 용어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개정안에도 지령이라든가 사주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대법원 판례 차용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간첩이 구성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명백히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하는 규정은 그냥 임의로 놔두고 행위태양을 변경시킨 내용이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것은 판례의 입장을 다 반영하면서 소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했다는 취지에서 풀어서 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 오랫동안 인정된 내용이고 또 국가보안법에서도 똑같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과거 냉전시대의 용어 같은 느낌,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예, 옛날 말.

○**유상범 위원** 다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나요?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사주나 그들은.

○**소위원장 김승원** 지시와 명령의 합성어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그게 지령이지요, 지시와 명령.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결국에는 지령과 사주 모두가 의사 연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원래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따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장동혁 위원** ‘적국과의 의사 연락하에’ 이 정도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사실 지령이 지시와 명령을 합한 용어라서 풀어 쓰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장동혁 위원** 의사 연락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쓰셨으니까 ‘적국과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의사 연락이 하나는 받고 나는 답 안 하면 일방적 지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의사 연락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외국이 들어오면서 법정형이 달라졌는데요. 적국과 외국은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성윤 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국가기밀은 이미 정립된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 들었던 판례를 보니까 1980년도 판례가 많고, 90년대 이후는 판례가 있나요? 국가기밀에 관한 정의를 한 판례가 있나요, 2000년 이후라든가? 지금까지 전 시간에 논의한 것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간첩죄에 와서 국가기밀, 군사상 군사기밀, 이런 기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국가기밀에 관한 판례가 제가 보기에는 예시된 것이 80년대하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9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것 하나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판례가 계속 유효한 판례로……

○**이성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

이 발달했고 조금만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범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가기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판례에 맡겨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적국뿐만 아니고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도 간첩죄에 둔다면 국가기밀도 정의를 둬서 명확하게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구성요건의 명확성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옛날 것, 30년 전 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부차관님이나 행정처 차장님, 최신 판례가 없으면 새로 개념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는 기존의 9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표현을……

○**이성윤 위원** 판례가 30년 전 일이잖아요. 그 판례 가지고 개념 규정을 해 놓고 따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간첩의 의미를 풀어 쓰시려고 노력을 해 주신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수고하셨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금 더 표현을 표준말에 가깝게, 한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회했다가 식사하시고 7시 반쯤 속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녁을 그렇게 오래 먹습니까? 뭘 하시려면 빨리빨리 그렇게 해 주고…… 지금 다른 분들이 일이 있지만 박군택 위원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7시 반은 너무 늦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사정이 있는데 좀 조정해서 7시 반에 속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첩죄 관련 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정 수석께서 위낙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됐던 산업기밀 이런 것은 관련된 법률로 별도로 정리하기로 다 했고요.

그러면 결국 적국을 위한 간첩 규정과 외국을 위한 간첩 규정에 양형 차이를 뒀는데 이렇게 차이를 크게 둘 상황인가요? 내가 보니까 물론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 간에 분명히 죄질이나 처벌 필요성 이런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랑 단순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랑 양형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양형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21대 국회에서 간첩죄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 행정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던 이유는 기존에 군사기밀과 산업기밀에 관해서는

이것을 처벌하는 특별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국가기밀이 누설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법률을 규정함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 균형 있는 양형과 그다음에 조문의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군사기밀 보호법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1년으로 늦추면서 그사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이 특별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법률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정형이 좀 상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개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기밀과 관련해서는 산업기밀 중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산업기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처벌을 두고 있는 특별법의 그 형량이 일반법보다는 좀 상향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법에다가 무기징역을 규정하게 되면 그것의 조화라는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일반법의 형량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무기징역은 삭제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논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외국을 위한 간첩죄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범죄고 현행 간첩법에 예비·음모죄가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보다 높아야 된다. 그리고 다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돼 있는 반면에 무기나 사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게 된 것은 처음 도입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서 국익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양형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판단하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상한을 정해 가지고 하한으로 하는 유기징역형을 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규정들도 법정형을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 특별 규정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나치게 중형주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면 결국은 논리를 잘 만들어야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여러 법률 중에 군사기밀 보호법은 현재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항인 외국인에 대한 간첩죄하고 구성요건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군사기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특별법은 현재 법령보다는 법정형이 상향이 돼야 된다는 견해이고요.

그 외에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포섭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포섭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법보다 상향될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조화를 통해서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법에 무기징역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일반법과 이 법률이, 개정안이 들어가면 특별법 규정에 해당되는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양형 부분은 일반 규정에 비추어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은 국방부에서 관련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산업기술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안은 굉장히 중한데 실제로 선고형이 낮게 선고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면 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제목을 변경하셨고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옆에 현행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행……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기존의 간첩죄가 방조범도 정범으로 처벌하는 그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단 의사 연락하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물론 판례로 확립돼 있다 그려지만 의사 연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방조라도 크게 남용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현행 98조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갖다가 처벌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수정의견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른 심사보고서 보면 방조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특별히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4쪽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24쪽 보면 이성권 의원안, 강유정 의원안 돼 있고 옆에 수정의견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고 하고……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이것은 해당 조항에 해당 분야별로 다시 수정의견을 넣어 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똑같은 내용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종합해서 다시 규정한 것이고요. 그냥 똑같은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쨌건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지금 수정의견 98조에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현행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적국의 간첩이 와서 간첩활동 하는데 이걸 알고도 방조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는 적국의 지령…… 국가기밀을 중개하거나 적국의 지령, 사주, 이를 방조한 자……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도 사실은 입법 형식은 이게 맞지요, 행위에 대한 방조니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그래서 사실 방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조항을 살려 두는 차원에서 그냥 두었는데 만약에 전달·중개 이런 행위들을 열거했을 때는 방조를 그대로 둘 견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간첩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소위원장 김승원** 어쨌거나 이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이런 간첩행위를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행위지법에 의해서.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자도 이 98조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8조의2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해서 한정을 시켰는데 ‘이에 준하는 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외국 또는 외국회사, 외국인 까지 들어가 있나요?

○**유상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 함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하마스—사실 정부 기능이 있고—헤즈볼라, 후티 반군 또 아프가니스탄의 ISIS 이런 것처럼 사실상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무장을 갖추면서 전쟁하는 이런 그룹들은 사실은 이에 준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이라면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독립국가인 미승인 국가라든가 국제기구 등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외교 상대방이 되는 외국인 단체가 해당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단체보다는 외려 간첩의 경우에는 헤즈볼라나 이런 특정 무장단체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그것도 포섭이 되는 건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위태양을 보시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행위태양에 앞서서 위원장님, 혹시 발언 기회 좀 주시면, 아까 국가기밀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좀 제가 보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성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까 9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판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그 판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6일 전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서도 97년도 기준 판례를 그대로 원용했고요. 2011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997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금도 법원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까 ‘이에 준하는 단체’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재하자고 정환철 수석이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그게 6페이지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에게 할 경우에는 너무 처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쟁점으로서 준한다는 표현이 조금 광범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어야 외국을 위한 간첩이 성립되는 게 적용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 본인들 기관 자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기밀을 탐지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사실은 그렇게 별도의 회사를 쓰는데, 중국에서 만일 그런 회사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행위를 하게 해 가지고 정보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외국회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동인데 외국회사라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처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외국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문제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 법률로 그냥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간첩죄로 처벌하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산업기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가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회사 소속이 돼 있으면서 산업기술이 아닌 국가기밀정보를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단체가 외형적으로는 법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외국과 직접 연계가 돼 있는 거라면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 질문하냐면 외국 정부와 직접 연계된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용될 수가 있는데 국내법적으로 그 회사가 실제로 해당 정보기관의 위장 회사나 그건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백이 분명히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 보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입법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또 그렇게까지…… 그 회사를 국가기관의 위장된 조직, 국가기관에 속한 조직 이렇게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건 규정을 하더라도 증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하여튼 워낙 제출된 법안이 많아서 저도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수정의견에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이렇게 간첩의 판례를 차용해서 넣으셨는데 98조 2항에 보시면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여기는 간첩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존의 1항과 2항이 좀 다르거든요.

○유상법 위원 그래서 삭제했잖아요.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가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제 의문은 어떤 의원님 개정안 중에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을 아예 빼고 그냥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법무부에서도 애초에 그런 취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어차피 이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런 요건을 제한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제목은 간첩이라고 돼 있지만 현행법 조문에서도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간첩이라는 것이 의사 연락하에 탐지와 수집하는 행위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것을 그대로 수정안에 옮긴다고 한다면 탐지·수집 이외에도 의사 연락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2항에 있는 누설을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합치다 보니까 탐지·수집 뒤에 누설에다가 전달·중개까지 포함해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 연락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간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사 연락하에 탐지·수집을 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사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지·수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비죄로는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본 간첩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탐지·수집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한다면 의사 연락이라는 요소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적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가, 의사 연락을 했는가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요건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명히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의사 연락이 입증이 안 되면 그러면 98조로는 처벌을 못 하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비죄로 처벌.

○소위원장 김승원 예비죄로 처벌을…… 처벌조항은 여기 없고 일반적인 예비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비, 음모가 뒤에 있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101조에 있습니다, 101조에.

○소위원장 김승원 101조(예비, 음모, 선동), 이건 법정형이 얼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2년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년 이상의 징역. 그렇게 예비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됐고, 외국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단체 그것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방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98조의2에서 그렇게 규정했는데 방조의 법정형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방조라는 것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불법성은 낮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첩죄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 생활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그에 따라서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한다고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담겨 있는 것이 형법의 취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법자의 의지를 계속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입법정책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방조범을 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어느 정도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형 자체는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를 방조한 자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구성요건에 방조가 있기 때문에 필요적 감경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동일한 형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안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동일한 형으로, 법정형은 동일하지요.

○**서영교 위원** 수정의견에는 방조가 7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3년이 어디 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98조의2를…… 하기야 사실 98조도 방조한 자인데 7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건 진짜 이상한데. 방조했는데 7년 이상이라 집행유예 안 되고 무조건 3년 6월로 해 버리면, 방조의 개념이 상당히 넓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방조,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본래 개정 전에도 똑같이 그 부분은……

○**법무부차관 김석우** 사실 98조(적국을 위한 간첩)에서 적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 부분이라 굉장히 적용 범위가 좁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국을 위해서 방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죄 방조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본범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국을 위해서 간첩활동을 하게 되면 7년 이상이니까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셈이 돼 버리는 거지요, 감경을 하더라도. 약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그 방조라는 개념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예컨대 약간의 편의 제공 이런 것도 방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저희가 전쟁을 전제로 한, 적국을 위한 간첩 방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상적인 범죄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간첩이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적국에 해당하려면 일단 전쟁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간첩죄가 전쟁 시의 적국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원래 그렇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북한을……

○**법무부차관 김석우** 북한은 국가보안법으로……

○**장동혁 위원**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첩죄에서는 적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8조의2에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포함하면서 사실 여기 98조의2에서 북한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첩죄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방조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약한 형태의 행위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간첩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가 있고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형은 7년 이상이어야 되고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지금의 현행 형법에 방조한 자도 7년 이상으로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방조가 이렇게 7년 이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7년 이상으로 돼 있었고, 7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간첩죄, 특히 적국을 위해서 간첩죄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이상 그래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이 최저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저는 입법자의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는……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을 먼저 좀 할게요.

적국이라고 법안이 있고 간첩이라고 얘기할 때는 북한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전에는 북한을 위해서 다른바 간첩활동을 했을 때 형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북한을 사실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형법상의 간첩죄 자체가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국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보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국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서영교 위원** 잠깐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박지원 대표님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일로 다른 나라…… 그래서 위성락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간첩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이런 식으로 또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적국만이 아니라, 저는 적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쟁 중인 국가라고 하는 걸 지금 사실 새롭게 인식을 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기

밀도 누설하고, 지금 산업 전쟁 속에서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밀과 이런 걸 누설한 경우에 간첩죄 적용하자 이런 취지로 간첩죄가 급하게 좀 더 논의된 것 아닌가요?

○**유상범 위원** 그게 아니라요……

○**서영교 위원** 우선 제가 한번 질문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첩죄가…… 간첩이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국가보안법도 요즘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쪽에 탈북자도 있고 이런 속에서 간첩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인지, 유상범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선 다시 한번 들을게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그걸 좀 질문하고요.

의원님들이 내놓은 안이 전쟁 중인 경우에 거기에 유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간첩죄로 하자고 해서 이게 쭉 올라온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장동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장동혁 위원** 예.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온 세상에 우리의 것들을 누설하고 이런 것도 간첩죄로 의율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전쟁 시에 방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한 사람은 엄연히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듣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급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주호영·장경태·위성락 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박선원·박지원 그분들이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들어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이 안 보여서……

○**유상범 위원** 그 안을 다 통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유상범 위원**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서영교 위원** 앞에 그런 안이 하나 정도 있어서 좀 비교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상범 위원** 그게 98조의2입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수석전문위원님 제 질문에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아까 차관님께서 적국 개념을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 중이다,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953년도에 간첩죄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때문에 형법 해석서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나 싶은 추정을 하고요. 적국 개념을 전쟁 중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은 글쎄요, 반드시 그런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적국 개념이 전쟁 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형법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한데 과연 그 해석이 어디로부터 연유해 왔는지 그 역사를 추적하기는 어려우나 최초로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간첩죄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최초의 해석이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하는 약간의 의심이 있고요. 저는 적국의 개념을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만 꼭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밀을 누설하고 이런 의미로 간첩죄를 만들자라고 제기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위원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국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형법을 제정할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으로 적국을 사용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은 적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형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도 혹시 포섭되는 상황을 예정해서 98조의2에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간첩법이 나온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첫째는 이게 적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가서 얼마 전에 최근에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거나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어떤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간첩죄 개정에 대한 기본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할 것인지 외국과 그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처벌 공백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98조의2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국가기밀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기업의 중요한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국가기밀에 관해서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정의 규정을 두자는 안도 있고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기관에서 합의해 온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예전의 국가기밀에 관한 판례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국가기밀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로 과연 고정돼 있고 고착화돼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에 더 담아 내려고 했지만 담아 내지 못했던 것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판례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확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이 국가기밀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나가면서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판례를 통해서 넓혀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행위태양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탐지·수집·누설·전달·증개 이런 행위태양을 판례를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고요. 의사 연락이라고 하는 것도 간첩죄의 본질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사 연락하에’라고 하는 문구를 두게 되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당연히 업무 자체가 탐지·수집·누설, 그러니까 탐지·수집하는 게 그 사람 본연의 업무인데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적국에 이걸 누설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실행의 착수나 행위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저는 처벌의 공백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은 있지만 지금 98조, 98조의2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다만 이 두 개를 양

형을 달리해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양형을 하나로 해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느냐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적국과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양형의 차이는 저는 수긍할 수 있는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 법안들이 있고, 16개나 되는 법안들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통된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뽑아서 처벌 공백을 메꾸면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수정의견이 그나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발의한 안의 내용도 다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통분모를 뽑자면 저는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특별법들이 있고,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정안이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논의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의문 드는 것만, 여기 4페이지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개정안 내신 분들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간첩의 행위태양에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가 있는데 네 분의원이 보관도 행위태양으로 넣으셨어요. 그 점은 어떠신가요? 탐지하고 수집하고 보관하고 누설하고 전달하고 중개…… 보관 부분은 어떠실까요?

**○유상범 위원** 보관을 했다면 그 자체가 탐지 또는 수집의 행위에 충분히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도 보관의 경우에는 탐지·수집의 불가별적 사후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처벌하려면 탐지·수집을 했는지를 또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갖고만 있다고 탐지·수집이……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하는 것을 본래 업으로 하던 공무원이 탐지·수집 할 때는 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국이나 외국과의 의사 연락하에 그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게 되는 경우, 그걸 언젠가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탐지·수집 할 때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퇴직하거나 그 업무를 종결한 이후에 적국을 위해서 외국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발견이 된다면…… 탐지·수집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본연의 업무였기 때문에. 저는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관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그래서 보관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98조 2항 삭제는 이성권·강유정 두 분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소수지요. 그런데 98조 2항 삭제한 것이 지금 수정의견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과 군사상 기밀 그 차이인데, 국가기밀 군사기밀 이것도 판례에 따른

겁니까? 예컨대 기밀로 지정돼야 기밀인지 아니면 기밀로 지정되지 않아도 적국에 혹은 외국에 누설이라든가 보내 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기밀이 되는 건지 판례라든가 그런 걸 고민을 하셨는가 한번…… 국가기밀에는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시고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은 판례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98조 2항은 누설로 돼 있는데 1항은 간첩으로 돼 있어서 염밀히 말하면 누설이라는 행위와 간첩이라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서 간첩이라고 위딩을 했을 때는 누설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행위태양이 가능한데 간첩으로 이렇게 풀어 쓸 경우에는 누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2항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국가기밀에는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동일한 것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상의 비밀은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와 같이 지정이 돼야지만 군사기밀 보호법상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형법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은 일반적으로 국가기밀로 보고 있다는 것이 교과서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국가기밀은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군사기밀 보호법상에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요. 국가기밀이요, 국가기밀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국가기밀은 판례의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기밀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외국에, 적국에 알려지는 것 이…… 유리한 경우에는 국가의 기밀로 본다 그런 판례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외국에 알려질 경우에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기밀로 대법원에서는 국가기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게 사례로 뭐가 있어요? 그렇게 두루뭉술한, 간첩죄인데 국가기밀이라 하면서 그렇게 두루뭉술한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 이게 외부 누설이 됐어요. 그쪽이랑 사주 연락해서 누설이 됐다고 쳐요. 그런 정도는 웬만큼 또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간첩죄에 해당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간첩죄라고 하는 걸로 딱 적용된 예도 없다고 하면서도 아까 장동혁 위원 말처럼 자기가 자기 업무로 수집하고 탐지하는 일들을 해 왔다가 나중에 사람이 변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해 준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이런 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 뚜렷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형에다가 막 이런 것까지 가는데…… 그리고 군사기밀도 어떠어떠한 게 군사기밀이다라고 하는 게 좀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한 채로, 방조가 사형에서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이 있을까요?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인가요? 군사기밀도 I급도 있고 II급도 있고 III급도 있고, 국가기밀도 문건에 기밀입니다라고 나오지만 진짜 기밀도 있고 아닌 기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더 잘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97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가 이게 형식적으로 비밀로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는 게 요건이 아니고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그동안 공지사실이 아니고 다른바 간첩 혐의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로 본 게 예를 들어서 미전향 장기수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수감 교도소, 복역 실태, 이런 거 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기밀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 이런 부분도 축적은 돼 있거든요.

○**장동혁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게 2항을 삭제하는 안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분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기밀의 정의를 두려고 했을 때, 군사기밀이나 영업비밀이나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하면 사실 2항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98조의2를 둔다고 해서 갑자기 2항이 사라져야 될 이유는 발생하지 않아요, 국가기밀과 군사상의 기밀을 판례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98조 2항을 두고 또 98조를 개정하면서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굳이 두지 않고, 거기에 군사상의 기밀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본래 있었던 1항과 2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1항과 2항을 뒀을 텐데,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98조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 98조의2를 이렇게 신설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 규정도 두지 않으면서 본래 있던 2항을 삭제해야 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냥 저는 98조 1항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다음에 2항도 거기에 맞게 바꾸든 아니면 2항을 그대로 두고 98조의2를 신설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전한 것이지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를 해 가지고 군사기밀이나 다른 것들을 포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걸 삭제할 필요성은, 나중에 혹시 그게 겹친다 하더라도, 굳이 그건 저는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해요.

○**서영교 위원** 국가기밀은 1에다 놓고 2에는 군사기밀도 놓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위원** 예. 그리고 98조의2는 외국이니까 그건 신설하고.

○**서영교 위원** 98조의2는 외국이니까 신설하고. 그러면 군사기밀도 2항으로 적용하고, 1항으로는 국가기밀로 적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가기밀이 지금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정부에 보면 대외비 이런 문건 많잖아요, 대외비. 대외비는 국가기밀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거는 또 내용을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판례의 취지도 그냥 비밀로 지정했나, 안 했나 그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 대외비 하면 비밀로 지정한 거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비공지성과 실질비성, 내용도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비밀로 공지했다고 해서……

○**전현희 위원** 모두 국가기밀은 아닌가요, 대외비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차관 김석우** 실제로 내용을 또 봐야 되는 게 판례의 취지이다 보니까……

○**전현희 위원** 검찰 특활비 자료는 대외비다 이래 가지고 제출을 안 하는데 특활비 자료는 예를 들면 국가기밀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건 약간 오늘 논의하는 거하고 좀 사안을 달리하는 거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대외비라는 이런 항목들이 무지 많은데……

○서영교 위원 잘못 공개하면 간첩 되겠네.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소위 말해서 적국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적국의 지령이 검찰 특활비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면 간첩인가요?

○유상범 위원 지령이 없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전현희 위원 왜냐하면 너무 개념이 애매한 것 같아서……

○서영교 위원 적국도 아까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만을 적국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밀 중에 수용소의 내부 구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간첩.

○법무부차관 김석우 미전향 장기수들의 인적사항, 수감 교도소, 복역 실태, 생활 실태, 휴전선 부근의 지리 상황, 땅굴 발견을 위한 남한의 동태 등등이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국가기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게 판례상인데,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의 상황 그다음에 미전향 장기수의 개인정보들 이런 게 사실은 그때는 군사기밀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썩 다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적국이라고 하면 전쟁 중이지만 꼭 거기가 아니어도 외국에 팔아먹고 이런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한 건데 잘못하면 고무줄처럼 어떤 건 기밀이고 어떤 건 기밀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장동혁 위원님은 보관도 이거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내가 북을 찬양하는 책자를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위반한 게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씌워서, 내가 그걸 갖고 있었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소지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관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의미는 이해하겠으면서도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간첩죄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것을 축소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이 크게 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북한만 관계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 가지고 처벌한 경우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적국이 아니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적으로, 얼마 전에 블랙요원들 이름이 중국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 사실상 간첩인데, 그래서 외국을 위한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98조의2를 신설하는데 그러면 98조는 어떻

게 규정할 거냐. 그래서 과거의 규정 형식을 판례의 입장을 적용해서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98조의 개정안이고 실제 본질은 98조의2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아시다시피 아까 차관이 설명했지만 현재 우리가 공개적으로 적국이라고 규정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주적의 개념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도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로 되면서 소위 말해서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규정은, 이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98조가 북한의 간첩과 관련돼서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98조의2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결국은 적국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논의를 하자고 한 거지 98조가 주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98조 자체는, 원래 있는 간첩죄는 놔두고?

○유상범 위원 그건 놔둔 거예요. 형식만 바꾼 거예요.

○서영교 위원 2에 외국 관련한 걸 넣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98조 2항을 삭제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사기밀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군사기밀 보호법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기밀은 예전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구글지도만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이 예전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밀이 되니까 이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대법원 판례라는 게 어쨌건 파기되지 않는 한 기속력인가요, 효력은 있으니까 그게 수사라든가 판결의 준칙이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은 국가기밀을 어떻게, Ⅱ급 이상 아니면 Ⅲ급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나요?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럴 건 아니고 기밀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사실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 그건 기밀성이 없어져서 국가기밀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기밀을 국가기밀로 지정된 거라든지 군사기밀도 몇 급 이상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기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판단해져야 될 문제고.

다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군사기밀 보호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2항은 삭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간첩죄에 대한 기본법은 형법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 기본 조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법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기본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삭제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98조 2항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 자체가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니까 2항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뀐 부분이다, 결국은 98조…… 사실 제일 처음에는 북한을 예정하고 98조 1항의 간첩죄가 만들어졌을 것인데요,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98조

1항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두는 것은 간첩죄의 기본 조항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변화에 의하더라도 이 조항이 기본법 기본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거를 본다면 저는 이대로, 지금 수정의견대로 가도 좋고요. 98조 2항은 살리든 그건 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논리의 선후로 따지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보관을 행위에 넣을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정리를……

○**장동혁 위원** 그런데 아까 보관도 서영교 위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냥 책 한 권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관으로 처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구성요건을 따지면 적국과의 의사 연락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는 경우만 처벌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걸리지지 않고 결국은 처벌까지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항대로라면 적국과 의사 연락 없이 그냥 우연히 책이나 어떤 것을 소지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저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드릴 수 있으면……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정리 좀……

아무튼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마지막 남은 게 4페이지 맨 윗줄 두 번째 보면 외국정부 산하단체를 박지원 의원님이 넣으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외국정부, 그에 준하는 단체, 외국정부 산하단체. 이것에 대해서 산하단체까지 넣으셨는데…… 그러면 외국정부 산하단체…… 그냥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해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정부의 산하단체인데 외국정부 산하단체가 공개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의 산하단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외국에 있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규정을 안 하게 되면 처벌에 공백이 생겨요. 규정을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외국정부 산하단체에 대한 간첩죄를 우리가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명확하고.

○**장동혁 위원** 그런데 외국의 지령이나 사주 또 의사 연락하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단체라면 여기 규율하는 단체로 포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인 것이지 입증만 되고 그 실체만 규명이 된다면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령이나 사주나 의사 연락하에 계속 활동하는 그 산하단체는 저는 이 조항으로 포섭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문구는 조금 더 다듬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98조 2항 삭제 부분과 관련돼서 법무부에서 검토할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실은 개정 경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부 입장은 군사기밀 보호법 때문에 2항을 뺀 건 아니고요, 2항이 결과적으로 현재 98조 1항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군사기밀 보호법, 특별법 때문에 뺀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좀 분명히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뒤에 계신 분들이 끄덕끄덕거리셔서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일단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다 나온 것 같고요. 98조부터……

○서영교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아까 2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은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98조에다가 그걸 다 넣어 놨기 때문에 2항을 뺀 거라고 보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누설이라는 행위가 1항에 있으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것 건드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현행 1이나 2에 있어도 별로 적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굳이 건드리지 말고 현행 98조 1항·2항은 그대로 두고…… 지금 장동혁 의원님 안이 1항·2항 그대로 두고 3항 넣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98조의2로 가자는 말씀이시지요.

○서영교 위원 98조의2. 그래서 그게 취지가 있던 간첩죄에다가 외국에 가서 하는 행위, 우리 국내 기관으로 있다가 아니면 외국의 기관으로 있는 자들이 우리 걸 빼 간 행위 이런 것을 간첩죄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지 굳이 98조를 막 만져서, ‘밑에 있는 게 국가기밀 이퀄 군사기밀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이것 군사기밀이야, 국가기밀이야’, 그동안은 이게 있어도 적용하지 못해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두고 98조의2만 넣어서 외국 관련한 부분을 넣으면 그냥 깔끔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다만 저희 법무부에서는, 98조의2가 이 간첩죄 개정의 핵심은 맞습니다. 핵심은 맞는데, 여기 행위태양 자체를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간첩이라 할 때는 그 문언의 해석상 틈을 엿본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탐지·수집까지만 간첩의 행위에 포함이 되고 누설이나 전달·중개는 간첩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누설이라는 행위는 간첩에는 포함 안 되지만 불가별적 사후행위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간첩이라고 하는 행위를 탐지·수집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고 누설·전달·중개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로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조 2항을 규정하면서 기준에 간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탐지·수집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어서 쓴 거였습니다.

○서영교 위원 98조 현행도 탐지·수집 없이 그냥 간첩이라고만 돼 있는데.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저는 차관님의 그 해석도 너무 판례를 자꾸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게 아닌가. 판례는 바뀔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포섭해 나갈 수 있듯이 간첩이라고 두면 가장 많은 것들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든 군사기밀이든 그리고 행위태양이든.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98조 1항·2항을 그대로 두고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결국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서 나머지 간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위태양은, 그리고 간첩이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그 대상은, 목적은 뭐로 할 것인지 그건 대법원 아니면 판례의 영역으로 남겨 둔다라고 한다면 가장 넓게 남겨 두는 형식은 지금의 형식을 그대로 쓰면서 9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해석이, 지금까지의 해석은 좁고 대법원이 앞으로 그 해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대법원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먼저 열어 주자는 취지로 간다면 저는 지금 수정의견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담으면서 결국은 국가기밀을 대법원이 간첩죄로 해석하면서 군사상의 기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2항은 사실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라면 2항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고집하거나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제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행위태양 중에 보관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위원 저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지금 혹시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의가 없으면 보관을 넣는 걸로……

○서영교 위원 저는 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관이라고 하는 게 일하다가 자기가 두고,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수결로 좀 해도 될까요?

○유상범 위원 그런 행위는 안 돼요, 의사 연락이 안 돼서.

○장동혁 위원 그런 것은 안 돼요.

○서영교 위원 예?

○장동혁 위원 탐지·수집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적국과 의사 연락하에 내가 이걸 누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만 그것이 사실은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고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점에 보관했던 사람은 범죄가,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지요.

-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적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꾸자면서요.
- 박균택 위원 수집이나 탐지를 하지 않는 것, 보관만도 할 수가 있습니까?
- 장동혁 위원 예.
- 박균택 위원 어떤 경우지요?
- 장동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지와 수집은……
- 박균택 위원 찾아내는 거고.
- 장동혁 위원 내가 정보 업무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위법성이 없이 탐지·수집했고 그걸 우연한 기회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보관한 시점에 적국과의 연락이 생겨서 내가 적국을 위해서 누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곧 누설해야 되는데 그사이에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면……
- 박균택 위원 정당하게 취득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 장동혁 위원 그렇지요. 취득 자체는 정당하기 때문에,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 생긴 시점은 보관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보관도 해야지만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설까지도 가지 않고 탐지·수집은 적법했을 때 보관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 아니, 누설까지 가지 않았으면 참작이 돼야지요, 이걸 가지고 누설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 장동혁 위원 양형에서 참작이 돼야지요.
-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체가 내가 누설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전에 끝났어, 그러면 아닌 거지요. 그런 것까지 다 견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 장동혁 위원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누설하지 않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걸린 것은, 그리고 탐지·수집도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양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위태양 등에……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보관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 그게 엄청난 탄압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설하지 않았는데…… 보관하다 누설하면 그것은 누설이라고 하더라도……
- 장동혁 위원 저는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 서영교 위원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윤 위원 저도 과하다고……
- 서영교 위원 절대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범 위원 제가 보니까…… 책 보관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갖다가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라고 다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 유상범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서영교 위원님은 누군가가 몰래 그런 정보를 던져 놓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서영교 위원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갖 유혹이 오지만 하지 않았는데 유혹이 왔고 보관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탄압과 그 사람을 간첩죄로 엮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지요.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이런 내용을 내셔서, 그래도 국정원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4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동혁 위원**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남용의 우려를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적국과의 의사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행위태양으로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걸 전제하고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려하신다면 저는 보관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렇게 넣으신 분들은, 사실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법리적으로는 그 부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관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예를 들어 국정원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그때는 가지고 있었고 국정원에서 나올 때 그걸 반환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적국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행위는 그때는 좀 불법한 보관이 될 수는 있겠지요.

○**서영교 위원** 국정원에 남기고 와야 되는데 갖고 나왔으면 국정원법에 해당되는 거지 간첩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유상범 위원** 물론 그건 되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걸 갖고 나왔으면 저는 국정원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중에 교섭을 받아서 반환행위를 안 하고 나와 버린 경우.

○**서영교 위원** 교섭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간첩행위가 아니지요. 이 사람을 노리고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어떻든 요구를 했는데 내가 안 보여 줬고 아직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은 간첩행위가 아닌 거지요.

○**장동혁 위원** 탐지하고 수집했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걸 삭제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면 국정원법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간첩죄의 구성요건도 될 수 있는 게 적국하고 의사 연락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정보를 넘기기 직전에, 누설하기 직전에 검거가 되면 보관 자체가,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럴 경우, 탐지·수집까지는 문제없었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의사 연락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붙잡혔으면 그것은 누설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것은 누설하기 위한 행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거지요.

○**장동혁 위원** 예비·음모와 구성요건 행위태양으로서 기수에 이른 걸로 처벌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보관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신가요?

○**서영교 위원** 저는 과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보관은 제가…… 아무튼 4페이지 정리된 것을 보고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보관을 더 주장하실 분이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 빼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냥 보관은 빼는 걸로 하고.

두 번째, 98조 제2항을 살리느냐 아니면 수정의견처럼 삭제하느냐 그 문제는 혹시 어 떠십니까?

○**박균택 위원**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98조 제2항입니다. 지금 수정의견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성윤 위원** 삭제하면 98조 1항 수정안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수정안에 국가기밀이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국가기밀과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를 크게, 그러니까 국가기밀 중에 군사상의 기밀이 포함되는 걸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국가기밀을 여기다 명시적으로 넣으면 사실 2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석상 필요가 없어지지요, 국가기밀 중의 하나니까.

○**서영교 위원** 저는 수정의견안에 동의하지 않고요. 원래 있던 안을 그대로 놓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런 간첩죄는 거의 적용하지 않아 왔고 이런 것들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 또다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남용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98조의2……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바꾸기 전이 남용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규정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국이라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차관이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전쟁이 날 때 외에는 적국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조의2를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조항은 어떤 형태로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남용될 사항은 없어요. 다만 98조의2 규정을 하면서 간첩행위를 판례를 반영해서 정리했는데 결국 98조의2와 규정 형식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규정을 정비하면서 수정안이 지금 나온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석전문위원님, 원래 있던 적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동안 쓰인 걸로는 북한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반국가단체이고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간첩이 북한하고 있는 간첩만을 생각했지 전쟁 중인 나라의 간첩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박균택 위원** 입법 당시에는 아마 소련하고 중공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겠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다 포함됐었지요.

○**이성윤 위원** 밑에 준적국 따로 있어.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국가보안법으로 주로 처벌됐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국가단체도 국가에 준해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율해서 이렇게 어쨌든……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들기 전의 형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국보법과 상관없이.

○**서영교 위원** 국가보안법 안에 간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그게 다 있지요, 국가보안법에 간첩행위가.

○**서영교 위원**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여기 간첩이라고 하면 그동안 간첩이었는데 어떻든 의미는 다르……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간첩’이라는 단일한 용어는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없습니까? 기밀누설 얘기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기밀 이렇게 풀어 쓴 단어가 있지 간첩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간첩을 다 북한하고 했을 때 간첩이지, 지금 이야 똑똑한 것처럼 전쟁 중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간첩으로 했을 때 북한을 생각하고 했던 간첩이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잠깐만요. 이제 정리하고요.

2항의 군사상 기밀은 국가기밀에 포함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누설이라는 행위가 또 그 앞의 1항에 누설로 새롭게 조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반복되는 것이라서……

○**박균택 위원** 2항에 군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서 형량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면 따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맞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를 써서 수정안대로 하면 필요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98조는 그냥 수정안으로 하시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전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면 수정의견대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대지 말고 수정의견대로.

○**소위원장 김승원** 98조와 98조의2가 또 대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들이 낸 안 중에 수정안으로 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도 보면 주호영 의원안도 1·2항을 현행과 같이 간다, 장경태 의원 1항도 현행과 같이 간다, 의원님들은 이렇게 내고 오히려 법무부가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이렇게 냈나요?

○**장동혁 위원** 이게 의원들이 낼 때는 그냥 1·2항은 그대로 두고……

○**서영교 위원** 3항을 넣은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지요.

○**장동혁 위원** 외국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98조를 국가기밀 그다음에 누설·탐지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니 결국은 국가기밀 안에 군사기밀이 포함되니까 사실 의미 없는……

○**유상범 위원** 19페이지를 보시면 인요한 의원은 자세히 풀어서 수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건 인요한 의원이고요, 다른 의원.

○**유상범 위원** 다른 의원들 안은 또 찾아봐야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과잉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2024년에, 그것도 간첩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적국의 의미도 애매하고 없는 것을.

○**유상범 위원** 이성권 의원, 강유정 의원안도 그렇게 다 수정했어요.

○**서영교 위원** 유명무실화돼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외국과 관련한 부분만 바꾸면 되지 굳이 그것을 바꾸는 것에 애를 써 가지고 비밀 탐지·누설 여러 가지를, 원래 있지도 않은 내용, 그래서 거의 쓰이지도 않고 간첩이라고 하는 것을 잡지도 않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북한과 관계 속에서 간첩을 잡는 것 아닙니까? 쓰이지도 않던 것을 굳이 손을 대서, 향후 외국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간첩죄를 신설하면서 굳이 과거 것을 2024년에 들고 뭐 하러 그걸 하냐는 겁니다, 의원들이 굳이 많이 내놓은 것도 아닌 것을.

○**유상범 위원** 아니, 이성권 의원도 그렇게 냈고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강유정 의원도 1항을 외국, 98조의2와 맞춰 가지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이 다 낸 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수정의견과 딱 맞는 안을 내신 의원님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16개인가요, 법안의 공통점을 잘 모아서 정리하면 저는 그래도 수정의견이 그걸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유상범 위원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5쪽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뭐에다 집중하고 있나 하면 외국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페이지에도 보면 조문표에 강유정 의원안, 이성권 의원안이 98조를 그렇게 규정한 게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안도 있고.

○**소위원장 김승원**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안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은 안이 박지원·박선원 두 분 안인데 박선원 의원안에도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간첩? 간첩이 뭐지?’ 그럴 때 간첩은 적국과 의사연락해서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께도 쉽게 풀어 쓴 그런……

○**박균택 위원** 전통적인,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남한의 신문 쪼가리들을 모아 가지고 보내 준 것도 간첩으로 해석을 해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국가기밀로 조금 내 주면 오히려 옛날 기준이긴 하지만 남용을 막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든지 다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거는 국가기밀이야, 너는 간첩죄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다고 해서, 물론 그 조문을 둔다고 해서 남용이 막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풀어 쓴다고 해서 더 남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풀어 썼을 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국가기밀이냐 아니냐가 갈려지겠지만,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이것이 저는 남용의 가능성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정의견이.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수정의견대로 가시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 반대하고요. 저는 역사에.....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풀어 쓴 의견으로 해서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관 안 된다 그랬고, 외국정부 산하단체는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해서 외국정부 산하단체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라고 하는 공적 단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말하는 게 개인회사로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백이 발생할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한데 그것까지 지금 다시 논의하기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회사로 들어왔을 때 그 회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로 행위한 개인을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사실은.....

○유상범 위원 그런데 다만 그게 외국정부 산하단체가 아닌 것은 논란이 있지.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이 취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98조는 ‘적국’이라고만 했고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했고 102조를 보면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라고 해 놔 가지고 개념들을 다 달리 쓰거나 용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할 겁니까, 그냥 ‘외국의 단체’라고 할 겁니까?

○유상범 위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가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좋은 지적이신데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102조에 있는 ‘외국인의 단체’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의 단체’라고 붙일 겁니까, 이대로 놔둘 겁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박균택 위원 그리고 98조의2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했으면 98조도 그냥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해 버릴 수는 없는 겁니까, 102조를 없애 버리고? 세 개가 다 조금은 형식이나 용어를 달리해서 혼선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만 통일할까요, 그러면요?

○유상범 위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준적국?

○소위원장 김승원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박균택 위원 그리고 98조의2에서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102조에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말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왕 98조의2에 ‘이에 준하는 외국 단체’를 넣으려면 그냥 98조에다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고 102조는 없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글쎄요. 102조는 살려 놓는 게.....

○장동혁 위원 그냥 단순한 외국과 적대하는 외국은 좀 차원이 다른.....

○유상범 위원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2조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이렇게 규정을 정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이건 놔두는 게 맞다.

그러면 98조에다가 ‘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장동혁 위원** 아니요. 102조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98조의2와 같이 맞추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장동혁 위원** 그 부분 맞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박균택 위원** 그러면 98조는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으로, ‘적국’으로?

○**소위원장 김승원** 예.

○**장동혁 위원** 98조의2는 그대로 두고 102조를 98조의2와 똑같이 맞추고.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헤즈볼라 같으면 전형적인 적국에 준하는 단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 헤즈볼라 생각해서 이것……

○**유상범 위원** 아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

○**서영교 위원** 아이고, 2024년에 간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과의 문제에서 간첩이지 무슨 적국과의 간첩을 얘기하고……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98조를 98조의2와 맞추다 보니까, 규정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규정이 된 거지 이 규정을 가지고 새롭게 뭘 더 쳐별하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님은 98조의2 규정을 위해서 만든 것보다는 지금 이 규정, 98조를 고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첫째, 이 규정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러 건드리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 쪽에도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넣은 이유는 바로 98조의2의 의미를 전부 다 이야기해서 넣자고 했는데 굳이 앞의 것까지 건드려 가면서 간첩죄 전부 다 그렇게 써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그것을 해서 적국 이야기를 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고.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는 적극 반대하면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남겨 두고 갑니다. 굳이 여러분이 바꿨으면 하는 게 98조의2인데 굳이 1까지 바꾸면서, 그런 생각인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저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서영교 위원** 아니,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완전히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일이고 그러면 충분히…… 굳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간첩죄를 왜 뭐 하러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간첩죄에서 간첩의 행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새롭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간첩에 관련돼서 인정됐던 행위를 판례에 기초해서 구성요건에 맞춰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희 102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면 98조의2에 '외국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외국 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구절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저에게 위임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는 기존 규정 중에 102조는 개정을 특별하게 검토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외국인의 단체'라는 게 주석서를 보게 되면 주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적국을 위해서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외교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의무 없는 행위하거나 의무 이행을 방해한, 이것은 너무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들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좀 그래서.

중국의 간첩죄를 보면 사실은 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되는 듯하게,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간첩죄로 처벌되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행정처에서 중국의 간첩죄 중에서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간첩죄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 서영교 위원 중국 공산국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단죄하는데 그 간첩죄랑 우리 간첩죄를, 어떻든 동의하는데……

○ 유상범 위원 궁금해서 지금……

○ 서영교 위원 궁금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우리는 제외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삭제했거든요. 그것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했거든. 걱정하시네,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 서영교 위원 지금 적국이……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짧게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간첩죄 신설은 지금 법무부도 반대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수정의견에 반영 안 된 것 보니까?

○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차장님께서도……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반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인데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형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법률도 법정형의 조정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더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정도 기간이 있으면 다른 법률들도 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과 발맞추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외국에 정보가,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문제들 공백을 메꾸자고 이 법들을 빨리 만들자고 많이 서둘렀는데……

○장동혁 위원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경과 규정을 1년을 뒤 버리면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장동혁 위원 필요하다면 즉시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저는 3개월 이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게 일반법을 규정을 하는 것인데 현재 특별법상의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그 외에 산업스파이들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 법률에서 형량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특별법의 형량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군사기밀 보호법 같은 경우는 종론이, 여기 말고 특별법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형이 지금 형법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소를 했을 때 편의 기소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의 요청을 드렸던 것은 그사이에 군사비밀 보호법이 필수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 21대에서도 이게 공전했던 이유가 일반법인 형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규정이 되고 있는 특별법과의 형량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종전에는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동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시행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즉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글쎄, 나는 굳이, 다른 법률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법을 1년 뒤에 시행을 하고 그사이에 법을 개정한다? 법이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가능하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걸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법에 한정에서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이 일반 형법에 맞춰서 형량이 조절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유상범 위원 부대의견을 해서 후속조치를 한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갑자기 즉시 시행까지 나왔는데…… 3개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뜻대로.

○ 소위원장 김승원 바로 즉시 시행……

○ 장동혁 위원 3개월.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 유상범 위원 가능한 당기는 게 의미가 있다 봅니다.

○ 장동혁 위원 저는 3개월 이상은 어렵고 3개월까지는……

○ 서영교 위원 이게 통과 안 되면 처벌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아주…… 저는 동의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례가 너무 급한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 차장님?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탐지·수집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반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이성윤 위원 예를 한번 들어 줘 보세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랄지 이것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국가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서 군사기밀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그런 정보는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정보원들의 정보가 유출이 됐었을 경우에는 특별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형법에서 일반적인 조항을 두자라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혁 위원 처벌에 공백도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형량이 너무 적어서 정말 중요한 기밀이 유출됐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이런 사례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98조의2를 만드는 겁니다.

○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허락해 주시면……

예전 2013년도에 정보사령부 여단 소속 정보통제반장이던 A를 통해서 군사상 기밀인 일본군 보병연대전술규범을 취득한 후 중국 산동성에 전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 자체가 군사기밀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군사기밀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서 군형법상의 군기누설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도입이 되면 이런 경우는 형법에 의해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유상범 위원 3개월로 하시지요.

○ 소위원장 김승원 3개월이 다수의견이신가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 의견을 다 동의해 준 겁니다, 위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 소위원장 김승원 3개월로 하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3개월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특별법이 그사이에 개정이 돼야 실제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형량 조절이 이루어지고 특별법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군사기밀 보호법이 형량이 더 낮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두 법이 공존하게 된다면 혼란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21대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일반 형법에 규정을 넣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 양당 합의하에 이와 같이 간첩죄를 신설한다는 취지를 공감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장동혁 위원** 그건 그것대로 정비하시고, 그건 우리가 의견으로 다룰 테니까 신속하게 정비하시고 3개월로 해서 시행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발의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사기밀 보호법 양형을 상향하는 게……

○**법무부차관 김석우** 군형법은 현재 발의가 돼 가지고 계류 중에 있고 그 외의 법률도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이 간첩죄와 군사기밀 보호법은 좀 다르지 않나요? 예컨대 군사기밀을 갖다가 어느 국내 업체에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간첩죄는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건 간첩죄는 아니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지요?

○**장동혁 위원** 그리고 편의 기소를 한다고 해서 검찰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정형의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더 낮은 죄로 기소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군사기밀을 팔면 간첩죄입니까, 군사기밀 보호죄입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대개 회사에 많이 팝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절차적인 요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되면 형법상 98조의2로 인해서 처벌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상은 대개 군사기밀을 알고 있는 중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밀을 어떤 영리 목적으로 회사한테 팔거나 그런 경우에……

○**박균택 위원** 방위사업체.

○**소위원장 김승원** 방위사업체 그런 거지요. 그런 곳에 팔거나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적국이라든가 외국에 하는 거랑은 구성요건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튼 겹치는 데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의 형량이 아주 낮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5년 이하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런데 지금 3년 이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맞춰서 군사기밀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면 10년 이하가 되고요, 일반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3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으로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본다면 당연히 특별법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특별법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법보다는

형량이 높게끔 빨리 개정이 돼야 기소상의 혼선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니까 국가겠지요, 거의.

○**서영교 위원** 다르긴 하지……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대개……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사기밀 보호법 중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에 누설을 한 경우에 그러면 결국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되면 10년 이하가 되니까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서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훨씬 경하게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국내 회사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것은 그냥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가니까 그런 논란이 안 생기는데……

○**장동혁 위원** 그 경우에 형법으로 기소하면 되지요.

○**박균택 위원** 저 뒤에 똑똑한 형사법제과 검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11월 중에 바로 손질해 가지고 정부안으로 발의를 하시든지 국회의원들한테 발의하라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똑해서 아마 일주일 안에 다 해결할 겁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이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딱 날짜를 박고 그사이에 한 5개월이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은 충분할 것 같은데, 3개월이니까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내년 3월 1일 정도 시행하는 걸로 딱 정하면 어떻겠어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공포 후 6개월로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공포 후 6개월로 할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공포 후 6개월.

○**유상범 위원** 공포 후 6개월로.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사실 1년으로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개정이 안 되면 동일한 효과는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관련 법률들이 법사위 소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서 종전 21대서부터 이런 신중의견을 말씀드렸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처벌 조항은 저희 소관 아닌가요?

○**유상범 위원** 아니지, 아니지.

○**소위원장 김승원** 군사기밀 보호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장동혁 위원** 그건 1년 들여도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한 6개월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비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이게 일반 형법이라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딱 하기가 좀……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그런 저희 우려의 취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께 말씀하셔 가지고 법사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을 각 상임위에 보내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저는 이의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의견은 속기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강력하게 이의 있었다고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사님, '강력하게'를 꼭 넣어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7)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9)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2)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28)

(21시16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18항부터 26항까지 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동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1페이지입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특례법이 9월 24일 날 법안심사소위를 해 가지고 10월 16일 날 공포되어 시행되었고요. 지난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 도입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지난 금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문별 검토 내용은 4페이지부터 정리하고 있는데요 1번과 그다음에 2번, 3번까지는 저희가 그때 한번 논의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13페이지 4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은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지난번 소위 때 논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방심위에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방심위 양측에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방심위가 사법경찰관리의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하 검토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은 지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다음 저희가 논의해야 될 수사 단계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관할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송치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수익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14조, 14조의2, 14조의3 등에 관련된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과 여기에서 유래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28쪽입니다—몰수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고 법원은 몰수되는 물건의 중요성, 법익 침해 정도, 재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몰수 판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시 구체적 타당성을 다소 제

약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은 법무부는 의견이 없으며 법원행정처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쪽 일곱 번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등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시 원본 삭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촬영물 등을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촬영물의 게시 중단 및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에 따라서 압수할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편집물·합성물 등의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해당 원본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과 법원행정처는 추가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부 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히 채증을 완료하고 그 완료를 통보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압수를 할 경우에 절차로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는 딥페이크랑 관련이 없는데 박은정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37쪽은 부칙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쟁점마다 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에 대해서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영상물 삭제·차단 응급조치 의무와 관련돼서 저희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은 많이 밝히셨는데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국가기관에 주어진 권한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업자에게 이걸 통보해서 불법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보통신업자가 이걸 따라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내리면 정보통신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합법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업자 본인 입장에서는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르는 형식을 잘 취할 수 있고 이것이 국가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빨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 조치를 방통위에 요청을 하고, 또 방통위가 신속하게 정보통신업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지금 현재의 이런 시스템이 잘 굴러가지 않거나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건 무조건 경찰에서 바로 보내서 신속하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단순히 경찰에게 업무 과중을 시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가기관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경찰한테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입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말씀 기회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좀 한번…… 이게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피해자에게 필요한 일이면 국가기관이 아무나 나서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없는 권한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도리일 것 같은데 왜 우리 국가기관들은 자기 힘을, 파워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서로 하겠다고 그리고 막상 국민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귀찮은 일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옛날에 DNA 관리 문제 같은 것들도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하겠다고 몇 년을 다뤘던 것들 하며, 뭔가 권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도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왜…… 저는 미루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피해자를 제일 일선에서 보호하는 기관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체계를 따지고 일원화의 필요성을 그렇게 중시했는지.

지금 수사도 공수처·검찰·경찰 다 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막상 필요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자꾸 이렇게 피하고 싶어하는지, 이게 과연 경찰 품 내고 권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논리를 폈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방통위 쪽으로 가다 보면 그걸 또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는 데 한참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새로 파악을 해서 저기다 의뢰하는 데 한참 걸리고 아무리 급하게 움직여도 한나절 이상은, 반일 정도는 더 걸릴 텐데 그사이에 이게 확산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주는 피해 이걸 감안하면 그냥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도 권한을 달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 소속, 이름 말씀하시고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알겠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경무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오해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사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장의 우리 수사 인력 현황 그다음에 방심위, 방통위 또는 여가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는 기관 그다음에 사업자를 관리하는 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수사도 해야 되겠다고 19년에 MOU를 체결하면서 그

때 만들었던 논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시스템을 이미 운용해 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법안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정안을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돼서 6개월 뒤에 시행될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남희 의원님과 강유정 의원님께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성인물에 대한 건데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경찰이 위장수사 외에 응급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동일 내용으로 응급조치를 만드시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강유정 의원님 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부적으로 경찰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방심위 의견도 듣고 하시면서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경찰이 이미 19년부터 방심위, 방통위, 여가부와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갖춘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코 더 느린 게 아니고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거를 이해해 주셔 가지고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그 수정안을 가지고 통보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저번에 전문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수정안을.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아마 저희 수정안하고 그다음에 검토하신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로 혹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더 경찰이 왜, 이게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찰 입장에서 좀 더……

○**소위원장 김승원** 간결하게 해 주시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좀 빨리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요, 결국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박균택 위원** 직접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표현이……

○**박균택 위원** 직접 안 한다는 얘기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삭제권을 주신 게 아니고 삭제 요청을 하라고……

○**박균택 위원** 삭제 요청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삭제 요청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업자에게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방심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업자에게 직접 하는 것과 방심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만큼 업자에게 하는 것이 방심위를 통해 하는 거하고 시간차가 거의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업자를 통해 하는 것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 설명서를, 저희가 방통위법이나 정통망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번에 도표로 만들어서 그럼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 논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저희가 수정의견까지 붙였고 그거를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동일 내용으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공포돼 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 수정안,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이렇게 3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도 같이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청소년성보호법이요?

○박균택 위원 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바뀌어서 이제 공포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좀 질의를 해 볼까요?

심사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중단에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정보통신망업자가 성폭법 14조나 14조의2에 의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라든가 삭제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신고는 아마 개인적인 피해자 신고라든가 그런 신고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사실은 제일 많은 거는……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삭제 요청도 있고요. 그러면 경찰이 이 22조의5에 기해서 삭제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신고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거기다 성폭법 14조에서 응급조치를 넣은 것이 결코 새롭게 뭘 만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응급조치, 14조의4와 22조의5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응급조치도 하시고 방침위에도 같은 그런 요청을 보내서 양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다급한 피해자한테는 가장 적합한 국가가 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위원장 김승원 법은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빨리 삭제 혹은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집행의 문제, 의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도 계속 들었지만 말씀을 전문위원에게 전하셨다 하는데 혹시 이해가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전문위원께 의견을 다 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그래서 그 이유에 따른 최종 수정안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문위원 박동찬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 몰라서 저

희가 제시는 안 드렸습니다. 혹시 논의가……

○서영교 위원 아니, 저쪽에서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제가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어떻든 방심위를 통해서 가서 차단과 삭제하는 것이 경찰이 직접 하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시거나, 최소한 똑같거나 아니면 더 빠르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게 더 늦을 수 있고, 똑같거나 더 늦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업자 유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누가 요청을 해도 삭제를 신속하게 하는, 네이버나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쪽은 저희가 방심위를 통해 하든 사업자에게……

○서영교 위원 직접 하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현행 규정 없이 하든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메일을 수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일하고, 거의 같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삭제 탁 넣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내려가면 방심위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방심위 담당자에게 바로 갑니다. 그러면 방심위 담당자가 해당 업자에게 통보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보고 하라고 그래도 저희는 그것을 하나하나 또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차는, 방심위 직원이 저희한테 받아서 보내는 시간, 우리 직원이 보내는 시간은 똑같고요, 메일을 똑같이 치는 행위.

다만 이 직원이 방심위에 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냥 거의, 시스템이라는 건 그 시스템 안에 넣는 순간에 바로 방심위 직원이 받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시간차로 굳이 따지자면 1분이 될지 이런 시간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잘 듣는 직원은 누가 던져도 바로 삭제를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듣지 않는,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변칙을 쓰는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받았을 때 개들이, 업자에게 발생하는 의무하고 방심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의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관이 던졌을 때 이쪽의 의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찰이 던졌는데 개들이 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응하지 않으면 아까 처벌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들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방통위법이나 전기통신망법에 사업자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심의권을 가진 방심위에 심의 요구를 그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심위가 그때 비로소 심의를 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그 얘기는 예전에도 다 들었던 건데……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회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만일 방심위로 바로 보냈다면 방심위는 저희가 보낸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자에게 삭제하라고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긴급심의제도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심의 요구에

대비해서 미리 그 시간에 심의를 해 뒤 버리거든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삭제를 안 하고 있으면 심의권을 가지고 바로 삭제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통신사에게 차단하라고 요구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심위가 삭제·차단 요구를 해서 이쪽에서 듣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명령권을 갖고 있는데 방통위 명령권의 요건은 수사기관의 요청, 방심위의 심의 그리고 그려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쪽 업자에게 삭제 요청…… 삭제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결국 삭제 여부는 업자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업자에게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한 건 최종적으로 방통위의 명령이 필요한 건데 그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되 여전히 응급조치에 의한 삭제 요청을……

○서영교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이버나 다음은 삭제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서영교 위원 ‘국내 전기통신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 있는 건 저희가 하면 오히려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하는 것보다 방심위를 통해서 해야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안 이쪽에서 빨리 심의를 해서 때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똑같은 응급조치 규정이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경찰이 방심위를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얼마 전에 이미 본회의 의결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다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본회의 통과돼서 공포가 됐고요, 시행만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추미애 의원님 안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응급조치사항 중의 1호가 이런 불법영상물이 게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통신제공업자 전부 다한테 차단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정보제공업자한테 차단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지금 계속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부담이……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그렇게 읽혀집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것은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법……

○소위원장 김승원 수용,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니요,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맞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는 1호·2호·3호·4호의 조치사항이 있는데 삭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압수수색해서 원본을 뜯 복사본을 압수수색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원본은 나중에 삭제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그런 증거자료 수집 없이 바로 삭제 요청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차단 요청 정도로 우선은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영장 발부받아서 그 증거 수집을 해야겠지요, 증거 확보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삭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1호 조치가 아까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와 함께 해석을 하면 경찰에서 그런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제공업자한테 차단 요청을 하면 22조의5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사람은 그걸 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이 정도는 피해자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 주시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삭제 요청은 아까 보관 명령하고 상치되니까 빼되 차단 요청만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사실은 차단 요청의 대상은 통신업자입니다, 통신업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네이버 안에 어떤 불법촬영물이 있을 때 삭제.....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여기 1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미애 의원님 안 14조의4의 1호에 보면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도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있고 그래서 불법게시물이 있는 곳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위에 지금 죽 나열돼 있는 기관들이요, 여기에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KT 이런 통신을 관여하는 업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네이버 등 홈페이지 관리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삭제 요청의 대상은 홈페이지나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차단 요청은 홈페이지로 연결할 때 통신망에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 통신망을 관리하는 자가 차단 요청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차단 요청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통신업자에 대한 차단 요청,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인식이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14조의4의 1호를 그렇게 좀 운영하시면 되겠다,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유상범 위원 이것 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네.

만약에 차단 요청을 한다고 그런다면 소위 말하는 이 앞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자·운영자는 차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삭제 요청을 제외한다면 그 앞에 있는 규정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단·삭제 요청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그것을 하는데 권한 행사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 관리자로 하여금 불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삭제를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아예…… 그 사이트 자체는 불법행위도 있고 적법 행위도 있을 텐데 ‘너희들이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아예 접속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런 삭제와 차단 순서로 지금 방심위나 방통위에서 요구나 명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쪽은 그런 1번 삭제 요청은 제하고 2번 강한 차단 요청을 하라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성피해물, 그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삭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모든 것은 증거를……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채증, 완전히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삭제나 차단…… 차단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조금 다른데 삭제는 그것을 전제로 한 이후의 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요건들을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중의 일부는 채증 이것을 먼저 쓰시거든요. 채증하고 나서 삭제·차단 요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1·2·3·4호의 각 개별 행위들이, 앞쪽의 이런 조건하에 1·2·3·4호가 지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1호·2호·3호·4호의 각 행위를 해야 될 시점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세부적으로 누구에게 할 것인가가 가장 지금 첨예하게 붙었는데 그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방통위 정통망법이나 실제 돌아가는 업자의 행태를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식으로 1호의 행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제권을 줬는데 너희들이 행사 안 한다 그러면 경찰이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을 지금 의무를 주시는 거고 그 삭제 요청하는 방법을 시스템에 의해서 경유하게 할 것인가 직접 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지금 남은 겁니다.

○박균택 위원 한 말씀……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지금 이게 수정의견이라고 서면 내신 거지요, 전문위원님께?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마 경찰청에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한번 우선……

저희가 10시는 안 넘기려고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38조의2, 23조의2는 또 뭐야?

○전문위원 박동찬 설명드리면, 청소년성보호법과 거의 유사하게 경찰청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조율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청소년성보호법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표시구나.

○**전문위원 박동찬** 예.

○**서영교 위원** 원쪽은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소리지.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청소년성보호법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여기 오른쪽에 수정의견이라고 쓰인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찰청 의견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박동찬** 경찰청 의견하고 저희가 약간, 자구 수정은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취지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낸 수정의견에 전문위원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최종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대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원쪽이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통과됐던 청소년성보호법 응급조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상만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주로 성폭력법에서는 성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에 대해서 위장수사와 응급조치라는 똑같은 행위가 들어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응급조치가 먼저 통과가 됐던 거고 그때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담았으니 그 내용의 체계에 맞게 똑같이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지금 삭제·차단 요청이 있는데 성공 비율, 삭제되고 차단된 비율을 보면 몇 프로인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제가 아까 오전 중에 좀 들은 것 같아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삭제……

○**소위원장 김승원** 방심위를 통해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된 율, 비율.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방심위의……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자꾸……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차단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고 삭제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걸 저희가 방심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영교 위원** 제가 그것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번 8월에 5만 건의 심의가 있었고, 그래서 5만 건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는 딱 3건 됐다는 거예요, 5만 건 중에 3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이트는 삭제를 안 해 준대요. 그래서 3건 됐는데 차단은 5만 건 정도, 그러니까 심의를 요구한 것에. 그 얘기지요? 심의를 요구한 것에 삭제는 3건밖에 안 돼서 0.006%인 것 같은데 차단은 우선 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삭제를 하려고 그래도 삭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네요.

이것은 기사로 나온 거고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은 심의한 만큼은 된 것 같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만큼 방심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삭제가.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소위원장 김승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5만 96건을 심의해서 통보를 했는데 삭제 3건, 접속 차단 5만 1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삭제 3건만 보고 '5만 건이나 심의 요구해서 던졌는데 왜 3건밖에 삭제가 안 됐어'라고 표현됐는데 오른쪽에 차단이 5만 18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5만 이십몇 건이고, 5만 96건 중에 5만 21건이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삭제와 차단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너희들 스스로 삭제해', 안 하면 바로 통신사에서 차단이 들어가고 삭제를 했든 차단을 했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시청자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행위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삭제 행위를 하느냐 차단 행위냐 구분되는데 아까 3건은 그걸 오해한 기사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건이나 심의했는데 왜 3건밖에 삭제 안 했어' 이러지만 오른쪽에 차단 횟수가 5만 18건이 있거든요. 합하면 요구한 거의 대부분이 삭제 또는 차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삭제는 거의 없고 그냥 다 차단 쪽으로만 됐다는 거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이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잘해 준다, 잘되는데 외국에 있는 그런 정보통신업자라든가 혹은 요새는 P2P도 그렇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범 위원 삭제가 안 되는 거지요, 삭제가? 차단은 되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든 아니면 또 디스이라고,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보호센터라고 여가부에서 삭제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확대하는 안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삭제 지원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관님, 제가 문체위에 있을 때 불법도박 사이트 그 문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불법도박 사이트는 항상 이런 성착취물이라든가 성적인 이런 거로 유인을 많이 하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개념들이 예컨대 예비적으로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를 쪽 만들어 놓고 A에다가 성적 이런 물로 유인을 하고 거기서 하다가 차단에 걸리면 또 B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연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착취물이 계속 옮겨 다니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차단이라는 게 피해자한테는 확실하거나 딱 종결을 짓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서 사실은 국가기관이 그 이상의 추적이라든가 이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번째 논점인가요, 6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런 것까지 사실은 뒤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위낙 범죄자들이 뛰고 날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건 좋아요. 응급조치가 필요하거나, 아무튼 그 목적은 그런 모든 성적 불법 착취물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종결짓는 것이 저희 목적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경찰청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방통위에 맡기고 그러면 끝이다라고 하지 말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좀 더 아이디어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소위원장 김승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균택 위원** 이건 경찰이 사업자한테 직접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 요청을 하거나 어차피 경찰의 업무량은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시면.

○**박균택 위원** 어차피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없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박균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거나 방통위에 요청을 하거나 요청하는 데 드는 품은 똑같이 들 것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다릅니다.

○**박균택 위원** 일이 왜 더 늘어납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19년에……

○**박균택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말이 너무 길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증거 채집이 다 끝나고 나면 삭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삭제를 하는 방법이, 시스템에 그 동영상이 있는 주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RL이라고 표현하는데 개가 있는 주소명을 던져 주는 겁니다.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입력하면 시스템적으로 바로 방심위 긴급대응팀에서—24시간 근무하는 긴급대응팀이 있습니다—직원들이 실시간 들어오는 걸 바로 보면서 여기 어느 사이트에 있는 거네 이러면서, 그 사이트 메일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워딩을 두두 두두 칩니다, 이것 빨리 삭제하시오. 이렇게 엔터를 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방심위를 통해 업자에게 보내는데 수사기관은 수사에 전념하고 그 일에 거의 시간을 많이 안 뺏기지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있는 주소, URL이라는 그 주소명만 시스템에 입력해 버리면 실시간으로 날아가서 방심위 직원이 그 일을 바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별 메일 주소 다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재들한테 빨리 먹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문적으로 해 주는데, 그것을 경찰보고 하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지금은 여전히 이 일은 놔야 되고, 왜냐하면 이미 법이 통과돼서 아청물에 대해서는 방심위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할 일은 내용물을 보면 아청물도 있을 것이고 성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아청물이 있는 것은 지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하듯이 시스템에 넣어서 방심위를 통해서 보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행위를 하고요.

또 거기에 일부 성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 직원이, 전문가인 방심위 긴급통신반이 하듯이 이 직원들도 매일 주소 찾아 가지고 거기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해 주십시오라는 내부 공문 만들어서 외부망에 옮겨서 외부망으로 그쪽에 메일을 발송하는 그 행위를 새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일 자체가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 시간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니 그냥 믿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삭제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청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일이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삭제 요청을 하면 그게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 봐야 1~2분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고. 삭제 요청이라는 게 잘 받아들여지는 사이트나 사업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데는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조치가 되는 거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직접 하든…… 방통위인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방심위입니다.

○**장동혁 위원** 방심위가 하든 사실은 1~2분 차이밖에는 없는 것인데 경찰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방심위에서는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바로 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러면…… 경찰은 입력하면 그게 그냥 방심위로 바로 가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는데 경찰이 하려면 별도의 품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더 문제는 경찰이 요청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응하지 않고 심의 요청을 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기 쉽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1~2분 차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한테 일만 더 부과하는 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오히려 한 번 돌아서 결국은 다시 방심위 거쳐서 나가야 되는,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그 불편함, 오히려 지연되는 시간만 있다 그것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이제 좀 질문할게요.

여지껏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방심위 통해서 삭제는 3건밖에 안 돼요, 5만 건을 심의했는데. 그리고 차단은 5만 건이 됐다고 하자고요. 3건밖에 삭제가 안 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것……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니, 우리 경찰은, 딥페이크나 이런 허위 영상물로 내가 오늘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내 것 들고 가서 신고했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데 경찰이 방심위 통해서 삭제 요청을 했어요. 삭제는 안 돼요. 안 되고 차단만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여지껏 공부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외국계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곳도 그나마 방심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듣고…… 그러면 당한 사람은 그대로 둬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피해자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냐,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바로 방심위로 삭제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삭제될 겁니다. 지금 내가 그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라고 아첨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도 수정안에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이스피싱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 다 뜯겼어요. 뜯겼는데 그 돈 찾아 줘야 되잖아요. 왜 못 찾아 줘요? 외국에 서버를 둬서 못 찾아 준다면서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외국에 잡으러 가고 인터폴하고 작업을 해 가지고 잡으러 나가서 누구 누구 일망타진 그리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위원님, 우리가 하는 것보다 방심위가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방심위가 하는 건 지금 보면 삭제가 3건 아니에요? 여지껏 남아 있는 그런 건수는 어떻게 할 거고, 차단은 가려지지만 언제나 영원히 남아 가지고 도는 거 아니에요.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경찰이 인원을 모으든지 뭐 하든지 해서 잡으러 가야지 되고 잡아 오는 일을 해야지. 여기서 ‘위원님, 내가 하는 것보다 거기가 하는 게 빠르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모든 사람이 경찰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1, 피해자에게 내가 바로 방심위에다 요청했고요, 차단도 하고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2, 내가 네이버하고 다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삭제 요청을 하라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했으면 우리가 할게요라고 양쪽으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 말은 외국에다 했더니 애네가 또다시 구실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구실을 만드는 동안 방심위가 같이 내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심위가 했으니까 약간 삭제가 안 돼도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했는데 삭제가 안 되면 책임이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임이 따라옴과 동시에 이제 삭제 안 한 자들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경찰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잡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너 위험하구나’, 그러면 삭제 요청만 하면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잡으러 가지고 않고 삭제도 못 시키고 방심위 통해서 이야기만 해 주고. 니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만 수사하는 게 여지껏 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이야기하니 방심위 통해서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도 할게. 그런데 방심위가 더 빨리 가고 그다음에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해서 요청받았으니 한다.

그런데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삭제가…… 저희도 이제 알았잖아요. 이것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지 되는 거지요. 이것 위원장께서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었잖아요, 5만 건 중에 삭제는 3건밖에 안 됐고. 그런데 디지털성센터, 디성센터, 여가부에 있는 거기서는 하루 종일 삭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삭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삭제가 위주가 아니라 잡아들이는 게 위주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들이고 삭제, 우리가 삭제 요청권 가질게요. 대신 빨리 방심위 통해서 해서 반박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도 하고 아니면 잡으려도 가고 그러면 훨씬 권한이 크고, 우리가 삭제 요청권 했으니 잡으려 가는 요청권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훨씬 권한을 강하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삭제 요청권을 받고서 안 해서 삭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같이 공조를 하되 이제 좀 더 꾸려 가지고 외국에 있는 것도 잡으려 가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 얘기를 계속할 게 아니라 ‘받겠습니다’라고, 대신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또 의견 내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저도 지난번의 논지와 똑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까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죄송한데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서영교 위원님 말씀도 있고요. 저희가 음란물 계속 해 가지고 최근에 텔레그램이 반응을 했잖아요, 하겠다고. 국내 사이트는 물론 우리 법 내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이트 자꾸 방통위나 경찰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는데, 경찰에서 사회질서 또 미풍양속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한 결과 텔레그램이 움직였잖아요.

저는 경찰이 방통위에 이것을 던져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삭제 조치 요청권을,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 의무거든요. 그것을 각고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삭제까지 해 줄야 피해자들이 만족한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만족했으면 경찰한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조금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번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직접 업자들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영교 위원님 말씀처럼 잡아서라도 삭제를 좀 해 줄야,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응급조치를 하라니까 던져 놓고 우리는 책임 다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견은, 여기에 관한 응축된 의견은 경찰이 직접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 권한이긴 하지만 의무까지 함께 지는 이런 삭제 요청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응급조치는 경찰에서 꼭 함께, 방심위에도 보내야 되지만 경찰 스스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주진우 위원 저는 만약에 이게 중복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뭐가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업자 입장에서는 방심위 통해서 가고 여기서도 가면 두 번 받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혼선이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되는데……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업자들, 어차피 지금 몇몇 외국 업자 아니면 대부분이 대형 포털이나 이런 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량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는 되는데 한 10분 정도 늘어나는 일 같은 느낌이에요. 경찰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방 익숙해지면 오히려 저는 동시에 하더라도 좀 줄 것 같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게 위하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쳤을 때 경찰도 조치하고 모든…… 딥페이크는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다른 것 대비 너무 쉽게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초기에 잡아 놓으면 오히려 범죄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업무량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통제를 좀 같이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소위원장 김승원 예.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이 건 관련해서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국민들이 삭제가 빨리 안 된다고 하시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삭제를 빨리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역시 방심위다, 대신에 방심위가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래서 방심위가 아까 저희로부터 받으면 현행법에 의해서 바로 다 삭제 요청을 하는데 그때 안 되는 이유들, 그러니까 보냈는데도 몇 시간 내에 삭제를 빨리 안 하니까 그것을 빨리 몇 시간 내에 하게 하라, 안 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또 방심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

보고드리는 데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방심위를 통해서 저희가 삭제 요청하는 것도 요청 행위를 하는 것……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또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데 실제 범죄나 적발 건수는 적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개별 경찰별로 동시에 통보하고 약간의 혼선도 우려되고 또 조금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데 건당 10분짜리라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스템에 URL 붙여서 방심위 통해서 하면 좋지만 그게 지금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만에 하나 5분 차이라도 차이가 나면 5분 사이에 한 번 퍼져 버려서 그것이 통과돼 버리면 무한정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경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 보니까 공문 기안해서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옮기고 메일 주소 숙지하고 있다가 그것 보고 메일에 넣는 건데, 방심위에 있는 분들도 다 하는데 경찰관분들이 전문 수사관분들인데 그것 익숙해지는 데 제가 봤을 때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건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정말로 일선에서 소위 말하는 곡소리 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예산이나 인력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저번 논의 때도 그렇고 지금 굳이 부득부득 효율성만 따져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들이는 품이 경찰관당 한 10시간 걸리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냥 말씀, 설명 들었을 때도, 저도 실무를 해 본 사람으로써 담당자가 익숙해지면 10분, 15분 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좀 안심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안에 따르면. 그래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업자들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양쪽에서 두 번 통보 와도 이게 같은 것 삭제되는구나 하고 크로스 체킹되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저쪽 다 갈 수 있고 정합성을 보면 방심위로 일원화하는 게 맞지만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초기에 잡자는 차원에서 보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는 이걸 경찰도 같이 중첩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 건데요.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의 중첩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첩성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더 증가되면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저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경우를 다 중첩적으로 한다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건 너무나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심위도 하도록 하고 다 이렇게 해 놨을 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

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입법 형식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소위원장 김승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상범 위원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응급조치 의무 도입과 관련돼서 이 규정 형식을 보면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고 응급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 형태로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경찰의 범죄물에 대한 채증 행위는 빠지게 돼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정을 하신다면 입법 형식은 지금 경찰에서 제안한 대로 신고를 받거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 이와 같은 수사를 위한 확인 및 채증의 과정을 넣어야지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행위를 빼는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 통과를 시키겠다면 이 규정 형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에서 지금 삭제 또는 차단 요청권이 있다고 그래서, 방심위가 요청해서 삭제가 세 건밖에 안 되는데 경찰이 요청한다면 그 삭제 건수가 늘어납니까?

○서영교 위원 늘어나게 해야지요, 이제.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을 했는데 삭제 안 된 건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둔 사안일 것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아까 자꾸 삭제 말씀을…… 삭제 플러스 차단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결국 삭제는 안 되더라도 차단을 통해서 실질적 효과는 다 본다 이런 주장,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만 봐서 방심위로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게 실제 방심위에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고, 삭제와 차단은 다르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아닌 것 같다는 통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저희가 경찰에 이런 응급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협조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협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즉시 삭제하면 증거물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1호의 삭제를 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심의관께서 기관과 함께 좀

검토, 고민을 해 주시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오늘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으로 가도 될까요?

그 문구를 제안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같이 그 문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특별히,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 5번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상범 위원 반영 안 하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사기관이 이송할 명분만 더 주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래서 5번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유상범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섯 번째, 몰수·추징 규정인데요.

○유상범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할 때 범죄수익 환수 규정에 이미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그것 또 바뀌었어요, 그사이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지금은 이게 필요적 몰수가 때문에 입법적 결단으로 이 범죄에 관해서 필요적 몰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이 조항의 의미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하나는 임의적 몰수고 이것은 필요적 몰수라는 점을 누락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려하셔서 이게 필요적 몰수 필요성이 있으면……

○소위원장 김승원 안 그래도 그 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필요적 몰수에 대해서 법무부는 찬성 의견이시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첨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준호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안의 차이점이 정준호 의원안에는 범수법 12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바로 몰수 보전, 추징 보전에 관한 규정이라서 정준호 의원안에 의하면 필요적 몰수·추징에서 더 나아가서 추징 보전까지 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있어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박은정 의원안보다 정준호 의원안 같이 몰수·추징 보전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불법 수익을 원천적으로 확보해서 뺏는다는 게, 반환시킨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상범 위원 정준호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이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차장님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필요적 몰수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0페이지 일곱 번째,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시 원본 삭제인데 저희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유상범 위원** 양쪽 모든 기관이 다 지금 신중검토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 혹시 의견……

○**소위원장 김승원** 법무부는 신중검토시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취지를 간단하게……

○**소위원장 김승원** 행정처도 추가 검토인데, 법무부 취지를 좀 간결하게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부다페스트 협약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협약에 초청을 받아서 가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려면 이행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행 입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전명령제도입니다. 사이버 협약에서 말하는 보전명령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전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보전 조치를 하는 거고 경찰은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 간 현재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한 상태라,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의원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안이긴 합니다만 사이버범죄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행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현재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게 조배숙 의원안으로 일부 반영이 돼서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검사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 외에도 현재 이행 입법 하게 되면……

○**소위원장 김승원** 법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요, 현재 이행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는 경찰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최대 기한이 90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체와 보전기간이 명시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추미애 의원안보다는 보다 더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이행 입법 자체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1항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중단하고 원본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보전명령에 대해서 약간 주체가……

○**소위원장 김승원** 그 정도, 그렇게 해도 안 되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보전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전 요청을 하고 긴급한 경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보전기간이 90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추미애 의원안은 성폭법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에 국한해 있는데 현재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사이버범죄 일반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행정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입법 형식이 수사기관이 명령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체계라고 본다면 그냥 수사기관이 단순히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보전명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압수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발부받은, 청구에 따른 영장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바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명령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거든요.

○**유상범 위원** 부다페스트 협약을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보전명령으로 돼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검사가 보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전 조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트랙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요청을 하는데 긴급한 경우는 경찰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경찰은 검사를 거쳐서 보전 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전명령은 아니고 보전 요청을 수사기관이 하고 사업자가 보전 조치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요청을 해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외국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증거 확보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 이게 필요한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보전 조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명령을, 저희가 41조의2 해당 사항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시행일이 되면 그즈음에 다시 또 필요하면 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제 취지는 이게 훨씬 더 범위도 넓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검경 간 역할이라든지 보전기간 등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게 논의 진행상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모든 기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건 보류하고 그때 그 법안이랑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심의관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전명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검사가 압수 수색영장 신청해서 법원 발부받으면 그걸로 지금 압수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물을 채취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복제 형태로 해서 저희가 채취를 하고요. 여전히 원본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까지도, 사실 원본은 저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제 대상으로 해서 삭제를 시켜 버릴 텐데요. 만약에 그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물건과 전자정보의 차이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삭제라든가 차단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압수수색 같은 것은 일단은 삭

제·차단이 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보전명령이 있는 것과 크게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없고. 다만 원본을 갖다가 나중에 삭제하는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만 좀 더 여기가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추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보류하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제일 중요한 게 임시조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서두르시는 거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마지막 부칙이 남았는데요. 부칙에 대한 기관 의견은 어때시지요? 37쪽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 법무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는 몰수·추징 보전에 관한 특례, 정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제가 의견을 잠깐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는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 정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위원님들, 6개월 후 시행하고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뭐를 할 거예요? 아직 최종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뭐가요?

○**유상범 위원** 오늘 응급조치 이것만 의결하실 건가요? 우리가 합의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박동찬** 몰수랑 응급조치 두 개입니다.

○**유상범 위원** 몰수랑 두 개.

○**전문위원 박동찬** 다만 응급조치 관련은 조문 자구 정리를……

○**유상범 위원** 자구 정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야지.

○**소위원장 김승원** 응급조치에 대해서 자구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14조를 여기 13페 이지대로 하면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기 전에 삭제될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심의관에게 이거에 대한 자구 정리를 수정의견 준 이것으로 보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물습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의원안A 보면 우선 복제물 채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이렇게 해 가지고 삭제 요청, 채증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윤 위원** 조치 단계가 14조의4의1호를 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14조의2 영상물 등, 편집물 등, 복제물 채증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채증. 예.

○**이성윤 위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의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한……

○**소위원장 김승원** 삭제·차단.

○**유상범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일단 이 응급조치의 대상 범죄부터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 대상 범죄가 각 의원님들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응급조치할 내용들이 각 호의 4개 행위입니다. 삭제 요청하는 행위 그다음에 범죄 제지·경고 행위 그다음에 피해 신고 절차 안내 행위, 네 번째가 상담소 등 보호시설로의 안내 행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경찰청 의견은 일단 네 가지 각 행위를 해야 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이런 경우에 각 호를 하라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1호 행위는 언제, 2호 행위는 언제 이걸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 직전에 다를 문제가 응급조치를 해야 될 범죄가 강유정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님이 14조 내지 14조의2,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촬영물을 찍어서 제삼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삭제 요청을 해야 될 응급조치의 필요성은 14조 및 14조의2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는 13조가 들어갔는데 13조는 이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해서 일대일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이런 사진 내가 찍었어. 이거 봐’, 자기 모습을, 특정 부위를 찍어서 ‘봐’ 이렇게 하는 행위가 13조인데요. 그거는 일대일 행위라 업자나 통신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삭제 조치나 차단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3조는 조금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처럼, 강유정 의원님이나 박은정 의원님처럼 14조 또는 14조의2 이걸로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상 범죄 먼저 정하고 나서 그러면 1호의 행위는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증 및 그런 것이 등재돼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다음에 누구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데 누구에게가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호 행위입니다. 2호 행위 같은 경우는 범죄 제지 및 처벌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지 및 경고해야 될 대상자를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쪽에서 상대를 알 때 ‘야, 너 하지 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제지·경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경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유일하게 경고한다면 온라인상에다가 ‘야, 어디 어디에 뭘 올린 사람은 우리가 수사할 거니까 너도 빨리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그놈은 ‘아, 수사가 들어왔구나’ 하고 자기 증거물들을,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방을 폭파하고 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2호 같이 제지 및 처벌 경고는 지금 여기서 쓸 수 없는 내용이지 않나 저희가 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에서도 2호는 뺏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 신고가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안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삭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필요가 있어서 3호의 후단 부분은 살렸습니다.

4호 같은 경우는 상담소·보호시설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재위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는 살리는데 그 행위를 해야 될 시점을 2항에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항, 2항으로 두 개만 살리기는 했지만 1항에는 삭제 요청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피해 사실 등을 안내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요, 2항의 행위에는 상담소 안내 행위 등이 들어가 있고요. 2호만 지금 삭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의 제지 및 경고 행위만. 지금 이 범죄에서는 알 수 없고 오히려 도피하게 하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 같은 것들을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2호는 삭제 요청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호는 삭제하고 3호는 후단만 살리고 4호는 지금 수정의견 2항처럼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다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1항에서 전단부의 누구에게 삭제한다는 행위 그다음에 후단부의 그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등도 안내한다는 행위, 그러니까 후단부는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단부의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삭제 요청할 것인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삭제 요청을 지금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빨리 가서 그놈들을 잡아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삭제 요청을 하라는 행위는 그 사람을 잡는 행위하고는 좀 다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겁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애들 불량식품, 어린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팔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과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분담을 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업소가 각종 준수해야 될 행위들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야 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경찰은 영업행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이트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사이트 안에서 불량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불량한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방심위·방통위가 하도록 하고 있고, 방심위·방통위가 하다가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이런 것에 준하는 차단·삭제라는 조치 명령들을 하게 하고, 경찰은 그거와 별개로 조사해서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라고 해 놓은 체계에서 경찰에게 삭제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범인을 빨리 잡으라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로 효과가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삭제 요청을 업자에게 한다고 해서 빨리 삭제가 되는 게…… 이게 범인을 잡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빨리 삭제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데 그게 저희가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영교 위원 그래서 범인은 잡으셨어요, 그놈들을?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범인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저희가 범인을 잡고……

○서영교 위원 그런 놈들을 많이 잡았고, 잡기는 많이 잡았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최근에 저희가 딥페이크 탐지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검거 실적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수사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 보고 안 되면……

○이성윤 위원 피해자들은 책임을 지고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런데 경찰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수사에 대해 좀 더 책임을 지고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소위원장 김승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유정 의원님 안이 있고 추미애 의원님 안이 있고 박은정 의원님 안도 있고, 대상은 그러면 심의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14조 내지 14조의3에 기재된 범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14조, 14조의2까지가 될 것 같고요. 14조의3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4조가 일반 영상물이고……

○소위원장 김승원 간단하게, 14조하고……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들어가야 되고 14조의2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4조의2도 들어가야 되고. 14조의3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14조의3은 협박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행위 같습니다. 일대일의 행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4조의3이 협박죄인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런데 그 협박하는 이용물을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건데……

○소위원장 김승원 딥페이크 영상물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14조의3에 기재된 범죄라 그랬잖아요. 기재된 범죄니까 딥페이크 영상물로 하는 것, 그것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조의3의 행위 자체가, 14조 또는 14조의2에 의해 생성된 불법 영상물 또는 딥페이크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가 14조의3입니다. 그래서 협박에 쟁점을 둔다면 일대일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 삭제 이런 것하고 다른 문제이니 오히려, 어차피 사용하는 물건이 14조, 14조의2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면 14조 및 14조의……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2로 충분히 삭제 요청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14조의 3은……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14조의3을 넣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상관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4조 내지 14조의3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여기서 일단은 내용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니요,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시점이 신고를 받거나 위반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하면서 그게 유포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피해 영상물 채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 영상물 채증을 넣어서 채증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하니까 1호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1호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반 의심이라는 얘기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의심 사실도 넣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채증을 하라는 게 어떻게 임시조치가 돼요? 그걸 어떻게 1호에 집어넣냐고. 그건 규정 형식에 아예 안 맞잖아.

○소위원장 김승원 왜요? 일단 발견하면 채증을 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임시조치라는 건 삭제·차단 요청을 하자는 행위를 요구하는 건데 거기서 채증 행위가 무슨 임시조치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이 규정 형식에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채증이나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삭제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본문에 넣어 줘야지요, 하게 되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엉성해지잖아.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세 의원님이 다 비슷한 취지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21대 때도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심의관님도 피해 영상물 채증이 우선이고 삭제·차단 요청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규율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유상범 위원 그걸 어떻게 임시조치에 넣냐고. 응급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성윤 위원 상관없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 단계로 당연히 넣을 수 있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에 똑같이 강유정 의원님의 현재 이 안 그대로 올라와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 갖고 수정안이 만들어진 사실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어차피 전체회의 또 올라갈 거니까 저희는 소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호는 뭐가 안 된다고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지금 이미 범죄……

○소위원장 김승원 2호는 삭제?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소위원장 김승원 2호는 삭제, 동의하겠습니다.

3호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신고 절차는 이미 신고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는 신고 안내도……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각 호의 행위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나 그것을 반영한 저희 수정의견처럼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행위들을 먼저 결정하고 그 행위들을 해야 될 시점을 각각 정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규정하기 쉬운 형태이기는 한데 실제 뜻이 보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2호, 3호, 4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을 지금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될 시점을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것 말고도 다른 일반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나 이런 것들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험들을 반영해서 ‘아, 이 시점에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수정의견을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 나는 건 삭제 요청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청에서 뭔가 규칙 같은 걸로 좀 정하시면 안 됩니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조문이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굳이 그렇다면 그래도 수정안이 만들어진 이 수정의견에서, 여기서 문구를 수정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안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제대로 법안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대로 하면 2호, 3호 빼고 1호와 4호를 1·2항으로 정리한 건데, 여기 수정안은 방통위에 요청하는 안이니까 정 그렇게 고친다면 수정안 본문을 정리하면 되는 것 이지. 전체적으로 엉성한 구성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법사위에서 만드는 법이?

○소위원장 김승원 수정안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 이 수정안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서, 굳이 넣는다면 여기서 경찰이 요청하는 안을 넣으면 완결성이 높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오른쪽 수정안이 경찰 수정안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보완한 대안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건 아까 다 한 얘기잖아.

○이성윤 위원 여기 채증이 빠졌고요.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가 빠져 있어요.

○서영교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수정안 그래서 종합한 게 나와 있던데 그게 없나요?

○**유상범 위원** 이게 수정안이에요. 늦게 나온 거지요.

○**서영교 위원**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한 그 부분.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다입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1항, 2항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들의 각 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호, 그러니까 1·2·3·4호 중에 2호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 의견으로 나갔고요. 나머지 1·3·4호가 분배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서 반영이 다른 부분은 누구에게 삭제 요청을 하냐, 지금 ‘누구에게’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채증도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러니까 채증 부분은 그겁니다. 응급조치면 채증이 응급조치에 안 들어가고, 안 넣더라도 당연히 수사기관은 채증을 전제로 한 삭제 요청이지 수사기관 입장에서 채증을 안 하고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증 후 삭제가 필요하다면 채증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런데 채증을 응급조치에 넣는다는 건 코미디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응급조치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규정 안 하면 채증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삭제할 것처럼 규정 형식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얘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최초의 경찰 수정안은 채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충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14일 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28일 날 할 거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그다음 주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헷갈리게 수정안 자꾸 말씀하셔서……

○**유상범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박은정 의원안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해서 지금 심의관님이 말한 여러 가지 삭제 그것만 정리하면 저는 그걸 대안으로 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놓고 보면, 만약 그렇게 고치면, 여기 지금 채증을 응급조치라고 해 놨는데 이것 다른 법률가가 보면 어떻게 수사기관의 피해 영상을 채증이 응급조치가 되냐 할 것 아닙니까. 응급조치라는 건 급하게 제삼의 기관에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본문에 들어가야 될 규정이지 여기다 응급조치의 행위로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수사의 일환으로서, 그 개념으로서 채증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라는 의미로 했던 것이니까 응급조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사 절차로서도 있지만?

○**유상범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박균택 위원** 그렇요. 여기서 용어를 쓴 의미는 그걸로 보여지는 거지요. 일반 수사활동으로서의 채증이라기보다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고……

○**유상범 위원** 조금, 한 번 더 봅시다. 이게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밤늦어 가지고 다 피곤한데.

○**소위원장 김승원** 일단 오늘 박은정 의원안 그런 취지로 하고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걸 주시면 나중에 전문위원과 함께 해서 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경찰이랑 해서 문구 수정되면 다음에 와서 1번으로 이걸 정리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러니까 14조 내지 14조의3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피해 영상물 채증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든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 담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 문구라든가 이것만 나중에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에 차라리……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오늘 하시지요. 이것 지금 몇 시간 동안 한 건데 이걸 또 보류하고 2주 후에 26일 날 만나면 이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수정안에 내용이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본문에서는 충분하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 형식이 돼 있으니까 수정안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 주자고.

○**소위원장 김승원** 수정안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고,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똑같은데 뭘 안 담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2호, 3호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건 다 맞잖아요. 그렇다면 1호와 4호를 여기에 반영한 건데……

○**소위원장 김승원** 정리하시지요, 이제.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정리를 해 주고 싶은데 내가 제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수정안 의견처럼 정리하되, 여기서 방심위에 요청한다는 것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만 바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위원장 김승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

전문위원님이 의견안을 주셨는데 나눠 주시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걸 좀 나눠 주세요.

○**서영교 위원** 나눠 주는 동안……

제가 아까 의문이 생겼는데, 방심위가 삭제 요청을 해서 삭제를 3건밖에 못 하고 5만 건이 차단이라는 데, 국내에도 삭제한 개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삭제 요청을 안 하나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내면 방심위는 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어디에, 무슨 사이트에 뭐가 있으니까 삭제해야 됩니다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심위 긴급대응팀 직원이 바로 현장에서 일단 업자에게 무조건 보냅니다. ‘빨리 삭제해’라고 하고 개

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할 걸 대비해서 미리 긴급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단 요청을 바로…… 그리고도 24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미리 심의·의결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삭제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24시간 정도 지나야…… 그건 법령으로 정한 게 아니니까 10시간 만에 해도 되는데 일단은 현재 체제 내에서 24시간을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 자진 삭제할 때까지. 그런데도 안 하면 바로 통신사에게 차단 요청을 한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자율 삭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아까 3건밖에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추정하는 겁니다. 자율 삭제 요청 상태에서 아직 24시간 내에 다 못 했기 때문에 3건일 수도 있고 이런데……

○**서영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가서 이것 좀 확인해 오세요. 5만 건 중에 3건만 삭제되고, 차단이 됐다는 건 삭제 요구를 안 하고 차단만 요구하는 건지…… 방심위도 그렇고 이렇게 황당하게 하고 있는데, 차단으로 만족하는 건지……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서 저희들한테 좀, 방심위 통해서도 그렇고 보고를 좀 해 주라고 해 주세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흥석기** 알겠습니다. 방심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정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는 보니까 충분한 입법의 취지를 담은 것 같아서……

○**유상범 위원** 진작에 얘기했더니만 안 듣고 계속 우기다가……

○**전문위원 박동찬**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알려 드린 자료는 저희가 대상 범죄와 그다음에 대상 촬영물 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분리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14조부터 14조의3까지 죄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것이고 그 대상 물건은 14조, 14조의2에 대한 그런 촬영물 등이라고 대상을 구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다음에 게시판 관리·운영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 채증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전문위원 박동찬**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반영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채증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유상범 위원** 거기 있잖아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전문위원 박동찬** 예.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을 채증 및 확인한 경우에는’ 이렇게 채증을 확실히 넣어 버리는 건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소위원장 김승원** 이걸로 하되 채증을 좀 확실하게 넣어서 그냥 삭제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 가능하면 청소년보호법이랑 형식을 비슷하게 했으니까 통일시킵시다. 단어 하나를, ‘채증’을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똑같이 돼 있잖아,

지금.

○**이성윤 위원** 그런데 1호, 2호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전문위원 박동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에 대한 신고하고 그다음에 촬영물 등이라고 정보가 통신망에 나가는 것을 약간 구별하려고, 저희가 기존의 법령을 따르느라고 일단 호로 따로 구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어쨌건 여기에 채증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요, 심의관님?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채증하는 절차가 이 내용에 포함됐다라고 유상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받아서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똑같아요.

○**유상범 위원** 청소년정보보호법이랑 똑같아요.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제2조제3호라고 돼 있는데 제2조 중간에 제1항 빠진 거지요? 정보통신망법률 제2조제3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 박동찬** 예, 제2조제3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냥 항 없이?

○**전문위원 박동찬** 예, 거기에 정보제공서비스 제공자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장동혁 위원** 아, 그래요? 항 없이.

○**전문위원 박동찬** 예.

○**장동혁 위원** 보시는 사이에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삭제가 3건밖에 없는 거는 삭제 요청하고 좀 기다리다 그냥 차단 요청해서 차단되면 그다음에는 삭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하고 삭제될 때까지 계속 조치를 집요하게 꾸준하게 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차단되면 어느 정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냥 삭제하라고 하고 기계적으로 딱 몇 시간 지나서 그다음 삭제 안 돼 있으면 그냥 차단 요청하고 이 사건은 끝, 그다음에 또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삭제될 때까지 계속 그걸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 부분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정보하고 일반물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금 법에서의 표현은 정확하게 제지 이런 용어가 돼 있는데 삭제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네이버 어디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음란물이 하나 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죄송합니다.

어떤 사이트의 게시판에 영상물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의미하고 차단한다는 의미가 어떤 일이 되냐면 불법물을 촬영한 자의 자기 컴퓨터 안에, 서버에 그 물건은 저장이 돼 있고요. 그거를 원격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올린 거 아닙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 안에 그 내용이 박히면서, 그 서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는 어떻

게 표시되느냐면, 아까 URL이라는 길에, 컴퓨터 제품에……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을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또다시 업로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옮겨 다니면서 계속 업로드하는 거는 결국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하드에 있는 그 본래의 영상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은. 그러나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그게 안 되면 삭제나 차단이나 별 차이 없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치, 그렇게 놔두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자를 잡아서 행위자의 서버 안에 있는 것을 삭제해야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차단 요청에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차단 요청해 봐야…… 이게 전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차단……

○**서영교 위원** 아니 심의관님, 잡은 일이 있느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저희 최근에 딥페이크 사범을 검거한 통계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딥페이크 검거율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10대 아이들 검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여가위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외국 사이트든 그리고 이런 데 남아 있는 것들을 삭제하지 못했고 그놈들을 잡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차단 요청보다는 잡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잡았는지 성과가 있어야 불안한 피해자가 ‘이거는 방심위에 넘기고 우리는 잡으러 가는 거야. 가만 안 둘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방심위가 하는 게 빠르니까라고 했는데 방심위도 알고 보니 삭제는 5만 건 중에 3건밖에 안 됐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지, 차단은 됐다는데? 그러면 차단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삭제하고 차단을 달리 보시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까 전자정보의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서버에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게시판이 있는 서버에 그 물건이 남아 있고 그것이 현출되도록 URL로 표현이 되는데…… 삭제는 뭐냐 하면요 게시판 내에다가, 서버에서 여기로 보이지 않도록 URL이, 그러니까 영상물의 URL이란 꼬리표를 맵으로 써 개는 서버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 해당 게시판에서 보이게 하는 건데……

○서영교 위원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그게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라는 게 이 물건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제는 원 소유자만이 삭제하도록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법물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압수해서 들어내지 않는 한 삭제는 절대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이트 자체에다가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삭제, 통신가입자가 통신을 끊어서 못 보이게 하는 것이 차단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객.....

○이성윤 위원 그러면 3건은 뭡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그 3건의 삭제는 게시자가 못 보이게 한 것 3건 아니면 아예 통신자가 통신을 막아서 못 보이게 한 게 5만 몇 건, 합해서 결국은 못 보이게 한 것이 5만 20건 요구 중에 5만 십몇 건이 못 보이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를 보면요.

○서영교 위원 통신자가 못 보이게 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버에 물건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 상태로 저희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얘가 URL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비로소 컴퓨터에서 딱 눌렀을 때 그 동영상이 보이거든요. 이게 못 보이게 하는 것, 사이트 운영자가 못 보이게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을 삭제. 그다음에 얘가 안 하더라도.....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으면 그걸 못 하거나 안 하고 있을 때 아예 이 사이트가 쓰고 있는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망 업자가 거기 통신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차단입니다.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 법률 2조 제1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조문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2조 1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2조 1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정리는.....

○유상범 위원 심의관은 수정안 봤어요?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지금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밑줄 옆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채증이 당연히 포함되지요?

○서영교 위원 당연히 흐름에는 들어가 있겠지. 글씨가 없다는 소리고,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단어가 없다고 해서.....

○서영교 위원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닌 거지.

○소위원장 김승원 채증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당연하지. 채증 안 하면 뭘로 잡아?

○서영교 위원 그래.

○소위원장 김승원 심의관님,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채증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예,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바로 수

사관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고요. 그러면 형소법에 의해서 수사관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수사를 해야 되고요. 수사의 내용에는 범인을 발견하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수집 행위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증거 수집을 전제로 한 것은 들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오늘 합의된 거 정리된 걸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 나눠 드린 청소년성보호법과 수정의견 대비표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23조의2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면, 1항에는 범죄의 대상을 14조부터 14조의 3까지의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촬영물 등’으로 약자를 썼는데 각 호에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2호는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통신망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른 방심위와 그리고 정통망법에 따른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은 지금 속기록에 남긴 걸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유상범·장동혁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 법안 중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20항 및 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26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포함시키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범·장동혁 위원님이 이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승원 박균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전현희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동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